

비치용

대학 내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및 상황별 대응 매뉴얼



동국대학교 인권센터

대학 내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및 상황별 대응 매뉴얼

동국대학교 인권센터

차 례

○ 인사 및 당부 말씀	1
1. 동국대 성희롱·성폭력사건 처리체계도	3
2. 성희롱·성폭력 정의 및 관련 법령, 동국대 규정	
가. 성희롱·성폭력 정의	4
1) 성희롱 개념 및 성립요건(p5), 2) 성희롱의 정의(p5), 3) 성희롱 행위(언동)예시(p6)	
4) 성폭력의 정의(p8), 5) 성희롱과 성추행 차이(p9), 6) 성희롱과 성폭력 관계(p10)	
나. 관련 법령 및 동국대 인권센터 규정	11
3. 동국대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매뉴얼	
가. 사건 발생 후 상담 전 단계	15
나. 상담요청	16
다. 사건 신고	18
라. 중재	21
마. 사건조사	22
바. 심의·의결	24
사. 징계	26
아. 형사고소, 고발과 징계	27
자. 피해자와 가해자 공간분리	28
차. 직권조사의 개시 및 조사방법	30
카. 피해자보호, 비밀유지원칙	32

4. 성희롱·성폭력관련 상황별 주요사례 및 대응방안

가. 2차 피해 33

나. 교수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례 및 대응방안 35

- 1) 수업 및 상담에서의 언어적 성희롱(p36), 2)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성폭력(p40),
- 3) 논문지도/레슨 시 발생한 성추행 등 성폭력(p44), 4) 진로상담에서의 성희롱(p48)

다. 학생 간 성희롱·성폭력 사례 및 대응방안 52

- 1) 학생 간 성추행 등 성폭력(p53), 2) 디지털 성폭력(p57), 3) 데이트 성폭력(p64)
- 4) 스토킹(p69), 5) 외국인 학생 성희롱·성폭력(p73), 6) 단톡방에서의 언어적 성희롱(p78)

라. 기타 성희롱·성폭력 연동 사례 84

5. 자주 묻는 질문 89

6. 참고문헌 93

[부 록]

1. 인권센터 규정 94

2. 세계인권선언 104

3.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110

4. 성희롱·성폭력 신고기관 113

이 매뉴얼은 대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상황별 대응에 초점을 두고, 피해자, 가해자, 친구 및 선후배, 학과, 인권센터에서의 상황별 대처방안을 주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매뉴얼은 2018년 교육부가 대학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개발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개발 정책 연구” 자료를 주로 참고하여, 우리 대학 실정에 맞게 그 내용을 보충하고 수정·작성 하였으며, 그 외 2016년 동국대학교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2012~2015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사례집, 2018년 여성 가족부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등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우리 대학을 위해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참여자 : 동국대학교 인권센터장 안석모, 인권센터 팀장 백승규, 인권센터 상담원 이소담, 인권센터 상담원 임현정

성희롱·성폭력 대응 및 사건처리 매뉴얼 배포 당부 말씀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국대학교 가족여러분 !

지난해 70주년을 맞은 UN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다고 천명한 이후 인권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가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도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 받으며, 양성이 평등하고 성희롱·성폭력 없는 인권친화적인 대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포함하는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보다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약한 처지나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폭력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반인권적 행위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문화, 권력관계에 의한 구조적 불평등, 뿌리 깊은 성차별과 왜곡된 성 의식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우리대학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미투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그분들의 절규가 헛되지 않도록 성차별적 사회문화를 개선하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사회,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미투 및 'WithYou' 운동에 동참하고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학교 인권센터는 인권에 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상담, 조사구제 업무와 인권교육 그리고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인권기관과의 교류 협력 업무 등 동국대학 가족들의 자유와 평등,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말에는 직권조사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심각한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사건인지 즉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익명으로 신고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신고기간을 사건발생 후 1년에서 6년으로 연장, 중재의 실효성 제고, 신고대상자 확대, 교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근거마련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 및 성희롱 관련 조사 및 구제업무의 실효성과 피해자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구성원들께서는 더 이상 성희롱·성폭력의 방관자가 되거나, 자신의 피해 경험을 숨기고 고통 받는 피해자로 남아 있지 마시고 인권침해 발생 즉시 인권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사건 발생시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 그간 우리학교 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개발한 매뉴얼과 관련 법령들을 참고하여 우리 대학규정에 맞도록 다시 작성 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시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시 인권센터에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인권센터는 교내 모든 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동국대학을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가 없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인권 Campus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동국 가족들의 동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30

동국대학교 인권센터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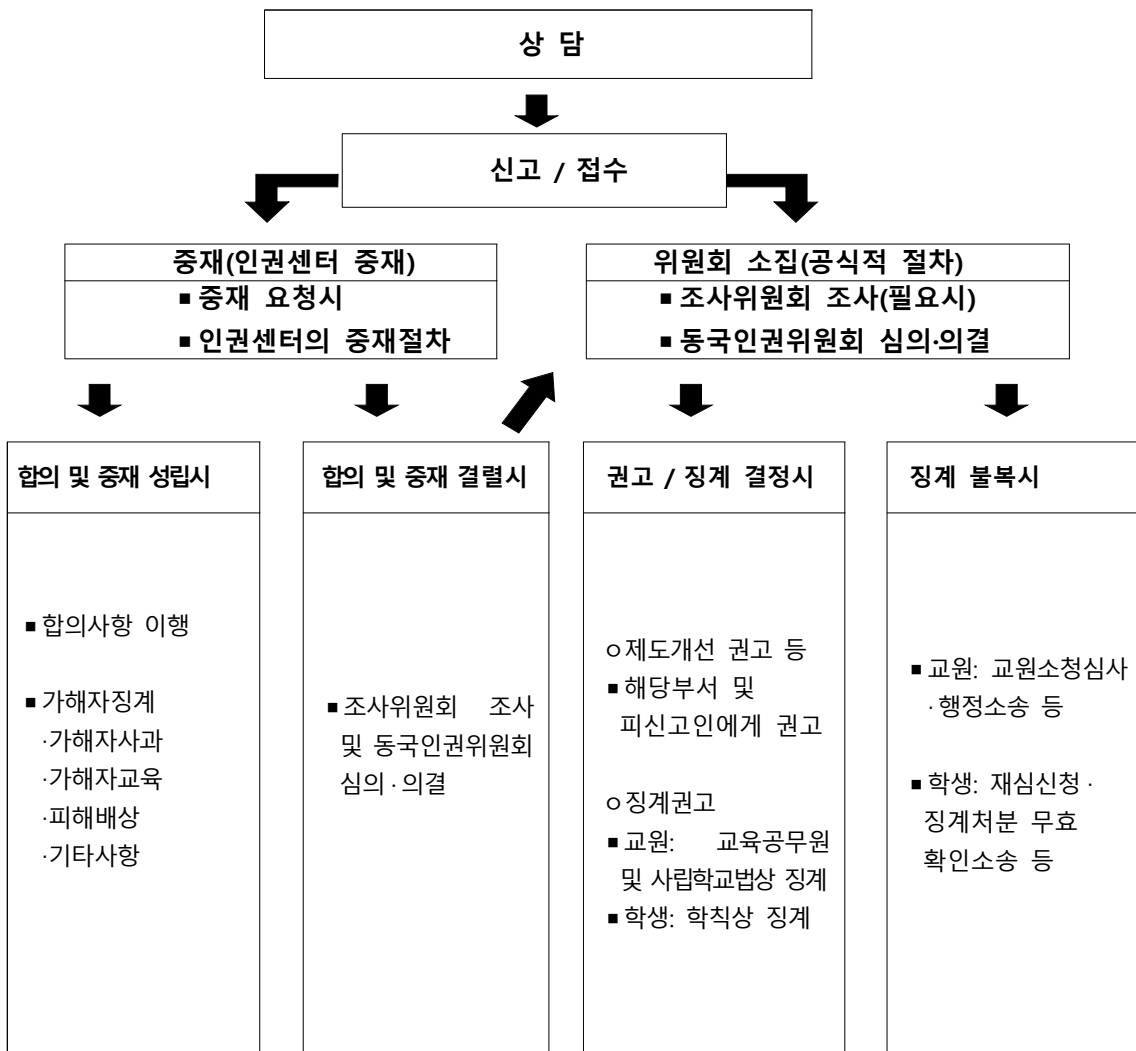
01

동국대학교 성희롱·성폭력사건 처리체계도

1. 동국대 성희롱·성폭력사건 처리체계도

○ 우리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사건 처리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사건 신고·접수 이후 개인 간 합의에 의한 중재, 그리고 조사위원회조사, 동국인권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권고조치의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진다.



02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및 관련 법령 동국대 규정

2.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및 관련 법령, 동국대 규정

가.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의 차이 및 법적 근거와 동국대학교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개념 및 성립요건

- 현행법에서 공통적으로 성을 도구로 하는 성적 괴롭힘(굴욕감, 혐오감, 불이익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 체	객체	행위의 발생	행위의 방법	성희롱 피해내용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각 급 학교, 공직 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불특정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 -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 주체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라고 하여 고용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성희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성발전기본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부가하며 성희롱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다른 근로자가 상대방으로 되어있으나 여성발전기본법 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희롱의 객체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
-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와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크게 두 가지유형으로 나뉜다.
- 동국대 인권센터규정에서 정한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이며, 동국대 모든 구성원(임원, 교직원, 학생 등)에게 적용이 된다.

2) 성희롱의 법률상 정의

-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공공단체에 대학 포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공공기관에 대학 포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학 포함).
- 「동국대 인권센터 규정」 제2조 제2호
 -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세부내용은 10-11쪽 참조)

3) 성희롱 행위의 주요 예시 (성적 언동)

-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은 성희롱의 방법(수단)을 **성적 언동**으로 공통적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성적 언동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성적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에 의하면,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기타 성희롱으로 분류된다.

○ 육체적 성희롱 행위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성희롱 행위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

- (1)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등을 하는 행위(전화통화, 통신매체, 인터넷매체(카톡, 블로그 등) 포함),
-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시각적 성희롱 행위**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기타 성희롱 행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법원 판례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

○ **육체적 성희롱**

- 허리에 손 두르기과 함께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
- 허리를 잡고 다리를 만지는 행위
- 블루스를 추자고 허리에 손을 대고 쓰다듬는 행위
-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는 행위
-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 노래방 가서 술도 한잔하고 놀자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등

○ **언어적 성희롱**

- “딱 붙은 옷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 항상 그렇게 입고 다녀. 회사 다닐 맛 난다.”
- “여자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데 나와야 하는데 넌 말라서 안 섹시해.”
- “여자가 그렇게 똥똥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 “○○씨도 여잔데 미니스커트나 파인 옷 같은 것도 입고 다녀”
- “술집여자같이 그런 옷차림이 뭐야?”
- “아가씨 엉덩이라 탕탕하네.”
- “술 먹고 같이 자자.”
- 자신의 성생활을 이야기하거나 상대방의 성생활에 대해 질문하는 행위

- “어제 또 야동 봤지?”
-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 “운동하고 왔어? 어깨 한번 만져보고 싶다.”
- “우리는 여직원이 많아서 여자 나오는 술집은 갈 필요가 없어.”
-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 ○○씨가 부장님 술 좀 따라드려”
- “우리 ○○씨~ 우리 이쁜이~ 우리 애인 어제 잘 들어갔어?” 등

○ 시각적 성희롱

- 성기 모양으로 조각한 당근을 개수대에 담가놓은 행위
-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탕화면, 스크린세이버로 깔아놓는 행위
- 야한 사진이나 농담시리즈를 카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
-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행위
- 원치 않는 윙크를 계속하는 행위
-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행위 등

○ 기타 성희롱 (그 밖의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
-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제기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니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퇴폐적인 술집에서 이루어진 회식에 원치 않는 근로자의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
-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거나 거래처 직원과의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등

위의 예시는 대표적인 성희롱 행위의 예시로, 위에서 예시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18).

4) 성폭력의 정의

-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굴욕적인 감정이나 신체적 손상,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정신적·언어적 성폭력까지 포함되므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 성폭력범죄는 성폭력 중 범죄로서 처벌되어야 할 행위들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한 것이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성폭력범죄’는 동 법상 특수강도 강간 등(제3조), 특수강간 등(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제8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9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을 말한다. 또한 「형법」상 강간(제297조), 유사강간(제297조의 2),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제299조), 미수범(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301조의 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05조)도 포함된다. 이러한 범죄 이외에도 형법상 음행매개(제242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제288조), 강도강간(제339조) 등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7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1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형법」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상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죄를 말한다. 이 규정은 피해자 연령이 19세 미만일 때 적용되며, 대학교 1, 2학년의 경우 해당될 수 있다(교육부, 2018).

5)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¹⁾

- 성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추행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 성희롱이라는 용어는 고용과 관련된 법 등에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모두 「형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는 있다. 성희롱 행위 중 신체 접촉행위인 추행, 성폭행 등은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성희롱 행위 중 언어, 문자 등의 행위는 「형법」상 모욕, 명예훼손 등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즉, 성희롱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라면, 추행은 성적 수치·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신체접촉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희롱은 민사적, 행정적 책임 또는 경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고 추행은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1) 국가인권위원회(2018), 성희롱예방교육 (사이버교육 1차시 참조)

- 성희롱 행위 중에서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된 성희롱 가해자들의 대부분은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 뒤에서 가볍게 끌어안는 행위,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 정도는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98조)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0조)고 규정하여 추행을 명백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 또한, 성폭력특별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 따라서 폭행, 협박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 따라서 가해자는 추행하려는 의사나 목적 없이 한 행동이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이를 불쾌하게 생각했다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과거 추행죄는(구 형법)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았지만, 2013년 법 개정 이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6) 성희롱과 성폭력의 관계

- 성폭력은 강간, 성추행, 간음, 몰래카메라 촬영, 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로 형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처벌대상이며, 광의의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굴욕적인 감정이나 신체적 손상,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정신적·언어적 성폭력까지 포함되므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여성가족부, 2017).
-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고, 성폭력(범죄)은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강제력이 행사되어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성희롱과 성폭력은 대체로 구분될 수 있지만 육체적 성희롱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한 상황이어도 행위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포르노 배우의 나체사진을 직접 들고 와서 보여 주었다면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되지 않지만 나체사진을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전송하였다면 이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은 중재나 동국인권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구제조치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으나 대학 내 성폭력은 대학 내 심의절차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 성희롱과 성폭력 모두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동국인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학 내에서의 징계가 가능하다.

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구제조차 관련 법령 및 동국대 규정

○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은

-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동국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을 우선적용 하고,
- 교수와 학생, 직원과 학생간의 사건의 경우 학교인권센터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 기본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과 성추행, 성폭력의 경우 형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학생 간 성희롱의 경우 상호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학교 인권센터 규정을 적용한다.
- 교수와 교수, 교수와 직원 간의 성희롱 사건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등의 직접적용이 가능하여, 신고가 없더라도 동 법에 따라 즉각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외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동국대 인권센터).

○ 성희롱 방지조치의 근거 (국가기관 등에 대학 포함)

-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제31조)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시행령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면서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동 시행령 제20조 제1항).
- 특히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1.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2.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4.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6.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에 한 사항, 8. 그 밖의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동국대학교에서는 인권센터 규정에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II-1> 현행법 상 '성희롱' 및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구분	주요내용	근거규정 및 요건
양성평등기본법	성희롱의 정의	제3조 제2호 1.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3. 성희롱 행위 내용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제2조(정의) 제2호 1.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에 의한 성희롱 2.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3.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원칙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성희롱의 정의	제2조(정의) 제3호(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라'목 1.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2.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 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행위 3.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동국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성희롱·성폭력 정의) 제2조 제2호, 제3호, 제5호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성차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및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다. 성희롱의 가해자 및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포함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을 말한다.
5.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및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헌행과 같음)

<참고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과 관련된 근거법령 >

근거법	주요내용
양성평등기본법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국가기관 등)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 (제5조) -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31조) ※ 국가기관 등에 대학 등 각급 학교 포함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대학의 교직원 포함) -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 (제13조)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4조) - 성희롱 발생 시 즉시조사,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제14조의2)
성폭력방지법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급 학교의 장 -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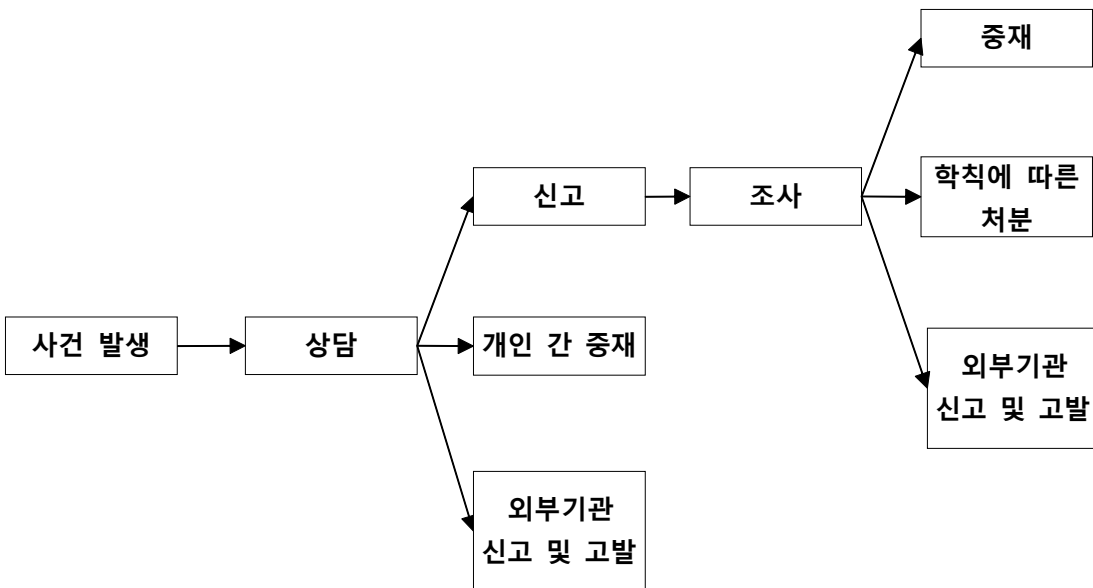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3. 동국대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사건의 피해자는 상담, 신고 이후 조사, 중재, 징계에 이르는 사건처리절차를 살펴보고, 각 단계에서의 사건처리 단계별로 행동매뉴얼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매뉴얼은 사건처리 각 단계에서 피해자, 가해행위자, 친구, 선후배 등의 제3자, 인권센터 등이 사건처리에 있어서의 행동기준과 주의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하 자료는 2018년 교육부의 “성폭력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개발 정책연구”내용을 인용, 추가하여 우리대학규정과 실정에 맞도록 재작성 하였습니다.)

가. 사건 발생 후 상담 전 단계

사건발생 후 대부분의 피해자는 현 상황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주변에 대해 두려움을 갖거나 자신에 대한 분노 및 자책에 빠져들기 쉽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이며, 일반적으로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선배, 지도교수, 조교 등)이나 친구와 상의를 한 후 학교 인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센터를 방문하기 전, 주변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 주변인의 돕고자 하는 선의의 마음으로 했던 충고와 같은 말들이 때로는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거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초기 사건처리 절차

○ 신고인 (피해자)

- 자책은 금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하게 교내 인권센터의 도움을 받는다.
- 사건에 대해 기억나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거나 녹음하여 남겨둔다.
- 가해자와의 문자 내용, 통화 내용 등을 그대로 보존하고, 필요시 사건 주변의 CCTV, 관련 사건에 대한 사진 등 관련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한다.
- 사건에 대한 증거나 증인을 확보한다. 특히, 성폭행의 경우 당시의 옷, 속옷, 신발 등 모든 물건을 세탁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다.

○ 피신고인 (가해행위자)

- 사건 전후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조사 및 면담 등에 성실하게 임한다.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2차 가해를 해서는 안 된다.
- 본인의 과오가 확인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

○ 제3자(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자책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을 위해 조력한다.
-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의라도 피해자와 상의 없이 사건에 대해 공론화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사건 발생 후 상담 전 단계의 유의점

- 개인 간에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몰래카메라나 SNS 혹은 단체 채팅방과 같이 다수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제3자의 신고 의지가 중요함.
- 이때에도 피해자의 신고 의향이 중요하므로 **피해자 동의하에 신고**
-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 녹음이나 캡처와 같은 증거 확보가 필요함. 단, 몰래카메라 영상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것을 함부로 보거나 저장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교육부, 2018).

나. 학교 인권센터에 상담요청

교내 인권센터 상담은 학교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이 반드시 신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담이라는 과정은 신고인(피해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우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학내 절차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행위자에게는 현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과 사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이다. 상담은 교내의 인권센터에서 진행되며, 상담뿐 아니라, 사건 접수, 이후의 진행 절차 등 이후의 공식절차 및 이에 대한 신고인(피해자)의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 상담방법은 직접면담도 가능하며,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상담도 가능하다.

○ 신고인 (피해자)

- 가급적 신속하게 교내 인권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
-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 혹은 기술한다. ※ 육하원칙과 시간의 흐름에 맞춰 정확하게 기술
- 증거나 증인 여부를 확인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 진술한다 (신체적 / 정신적 피해).
- 요구사항(사과/ 처벌/ 공간분리 등)을 제시하고, 사건 진행 절차를 확인한다.
-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비밀유지 및 믿을 수 있는 지인들과만 상의한다.

○ 피신고인 (가해행위자)

- 사건에 대해 진술한다. ※ 육하원칙과 시간의 흐름에 맞춰 정확하게 기술
- 증거나 증인 여부를 확인한다.
- 사건 이후 본인이 취한 행동이나 사건진행 절차 등 그 후 상황을 확인한다.
-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밀유지 필요 ※ 가급적 신뢰할 수 있는 소수와 상담

○ 제3자 (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목격자의 경우, 사건에 대해 진술(육하원칙과 시간의 흐름에 맞춰 정확하게)하되 증거나 증인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다.
- 친구나 선배의 경우, 피해자가 행위자와 분리되어 보호되는지, 피해자의 정서적·신체적 상황 확인,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는데 노력한다.
- 지도교수나 학생회의 경우,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사건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한다.**
-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공론화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제3자의 경우, 피해자에게 사건화에 대한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제3자로서의 역할과 범위 등을 고려하여 노력한다.

○ 학교 인권센터

- 상담 전, 상담자를 소개하고, 기본 인적정보 파악과 동시에, 비밀유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공지한다.
- 상담을 포함한 모든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적어도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심리상태를 잘 살핀다.
- 피해자 상담에서, 피해자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것을 설명하여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에게 드는 자책감과 후회가 잘못된 통념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 따라서 가해자가 잘못된 것이고 피해자가 잘못된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상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확한 상담내용 기록이 필요하므로 녹음이 필요함을 알리고 녹음 동의를 구한다.
-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재 피해자의 심리적 · 신체적 상황과 현재 행위자로부터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 사건해결절차에 관해 설명한다. 상담 후 신고, 개인 간 중재, 외부기관 신고 및 고발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병행할 수 있음을 알린다. 아울러, 조사가 진행된 후에도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해결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 상담 시 유의점

1. 피해자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신고의 의지를 다지고 오는 경우보다 현재 자신이 겪는 것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가 혼란스러워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피해자의 페이스에 맞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감정적 대처를 하지 않도록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과 사건접수 후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상담자가 피해자에게 미리 결론을 예단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은 삼가야 함.

2. 피신고인(가해행위자)

스스로 센터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불안과 분노가 높아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상담자의 정서적 지지가 행위자의 행동을 지지하는 듯이 보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행위자의 인권도 중요하므로 공정한 조사와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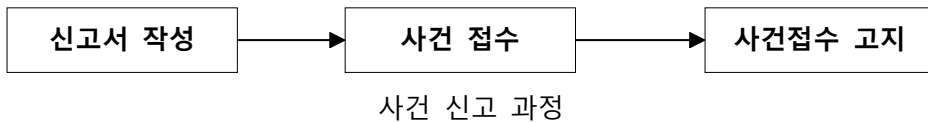
3. 제3자

피해자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자를 충분히 공감해주는 정서적 지지를 하는 것으로, 가치 판단을 하는 듯한 표현을 자제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 피해자의 요구사항이나 의문 사항을 확인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의견은 피해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조언함 (교육부, 2018).

다. 사건 신고

사건 신고는 상담 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되, 인권센터는 향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사건 신고는 피해자, 피해자의 대리인,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 조사 진행이 어려워 각하한다.

- 동국대학교는 2018년 12월 인권센터규정 개정을 통하여 직권조사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권센터 규정 제21조), 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신고가 없어도 사건인지 즉시 조사를 개시하도록 하여 성희롱 관련 조사 및 구제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교직원간 사건 등) 세부절차는 (제3장 참조)



○ 신고인 (피해자)

- 인권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며, 신고서 제출이후 내담자(피해자)는 신고인이 된다. 신청서와 진술서, 개인정보동의서, 비밀유지서약 등이 포함된다.
- 신고 시 작성하는 진술서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향후 사건 대응을 위해 증거나 증인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기록한다.
- 진술서에는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및 신체적 영향, 사건으로 인해 들었던 생각이나 감정, 일상생활에서의 영향이나 불편감 등을 충분히 표현하고, 본인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진술서를 작성한다.
- 신고인 측의 사건 신고서, 서면 진술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제출되면 신고한 것(신고일)으로 본다.

○ 피신고인 (가해행위자)

- 인권센터로부터 사건 접수 사실을 통지받는다.
- 고지의 내용은 신고 내용(피해자가 행위자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문제 제기한 내용)과 이 사건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과정을 알리는 것으로 구성된다.
-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힘든 경우에는 피신고인 또한 심리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 의논을 할 수 있으나 사건 내용 중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삼가 해야 한다. ※ 2차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 피신고인 고지 내용

- 사건 접수 일자 및 피신고인 이름, 간략한 사건 내용
- 당사자가 서약해야 할 내용
(비밀유지 서약, 사적 접촉 금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확인 등)

- 조사절차 설명 및 진술서 제출 요청 등
- 그 외 학교 규정, 당사자 서약서, 진술서 양식 등

○ 제3자(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사건 신고에 대한 피해자 의사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신고하는 과정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경우, 비밀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며,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건에 대한 예단을 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한다.
- 사건조사 및 후속조치는 인권센터에서 진행하되, 해당학과, 해당부서차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공간분리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접촉과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 학교 인권센터

- 상담이 진행된 후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고인의 의사를 항상 최우선시 해야 한다.
- 신고양식은 접수신청서와 진술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으로 구성되며, 이때 신고인의 증거나 증인 관련 사항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제출받도록 한다.
- 그 전에 상담이 진행되었던 경우라도 신고처리는 사건접수일 기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관련 기본서류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다.
- 신고인이 피해자인 경우,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비밀유지 및 필요시에는 심리상담 및 외부기관 연계도 가능함을 고지한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 공간 분리는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조치하는 기본적인 조치이므로, 신고자와 가해행위자가 공간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학과, 관련부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신고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조사를 거쳐 동국인권위원회 심의·의결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외부기관에 신고 및 고발조치 할 수도 있고, 중재를 원하는 경우에는 중재를 도울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절차가 가능함을 설명한다.
- 신고 후 즉시 피신고인에게 신고접수 사실을 알려주도록 한다.
- 피신고인이 기억이 안 난다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조사과정에서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가 있으니 조사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안내하며, 불성실한 태도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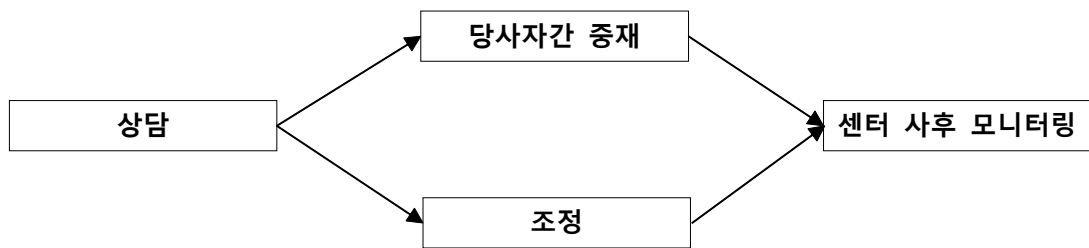
◇ 신고인이 신분을 밝히기를 꺼릴 때

신고 후 자신에 대한 부담이나 불이익으로 인해 무기명으로 사건을 신고하고 싶다는 경우가 있는데,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설명하고 신고 시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작성하도록 독려해야 함. 조사보고서나 심의 안건 등에서는 익명처리로 진행 할 수 있음.

※ 동국대 인권센터 규정개정으로 무기명 신고도 가능하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엔 조사가 어렵고,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조사가 어렵다.

라. 중재

피해자가 조사위원회 등에 사건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고, 당사자 간 중재처리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 피해자와 행위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조사과정이 있더라도 조사위원회가 반드시 개최되는 것은 아니다.



중재(조정) 과정

○ 피해자

- 신고인(피해자)은 인권센터를 통해서 혹은 개인 간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해결을 위해 중재를 원한 이유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다. 단, 행위자와 둘 사이에서의 중재는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 피해자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양상과 심각성, 대학 공동체의 안녕과 교육적 의미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사건처리를 결정한다.

○ 피신고인(가해행위자)

- 행위자의 중재 요청은 인권센터규정에 따른다. 단, 행위자의 중재요청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무엇보다 행위자의 자발적이고,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재교육 이수 등 행위자의 노력과 진실성 여부가 중요하다.

○ 제3자(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중재가 진행될 경우,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강한 주장이나 자신의 판단을 강조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공간분리 및 학습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중재는 원칙적으로 인권센터에서 진행한다.

○ 학교 인권센터

- 중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 중재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상처받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사전에 안내하고 피해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중재가 성립되지 않으면 심의로 갈 수 있는 만큼 사건관련 서류의 보안을 철저히 한다.
- 중재 후 서약한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피신고인이 중재안을 제안할 경우 인권센터는 1회에 한하여 신고인 및 대리인에게 중재안을 전달할 수 있다.
- 피신고인(가해자)의 중재요청 의사가 강해 보이면 피해자는 학교의 문제해결의지가 없다거나 행위자편에서 사건을 중재하고 있다는 오해를 할 수 있으므로, 늘 중립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마. 사건 조사

조사는 상담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조사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되, 늦어도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보통 60일 이내에 완료한다. 조사는 인권센터에서 담당하며, 조사위원회와 동국위원회심의·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조사위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전에 성폭력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법률적, 의료적 지식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다. 조사나 심의·의결단계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신뢰관계인 및 조력인이 동석할 수 있다. 신뢰관계인에는 친구, 선후배, 지도교수, 부모, 가족, 상담소 활동가 등이 포함되며, 조사나 심의과정에서 신고인 등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신고인 (피해자)

- 상담에서 진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진술서를 제출한다. 성희롱의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전체에 대한 맥락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건 발생 전후, 사건내용, 피해자의 행동과 느낌 등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목격자, 증거자료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사건관련 요구사항도 분명히 기술하고, 진술서 작성 시 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큰 경우,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대리인, 신뢰관계인 및 조력자가 동석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통역이 가능한 관계자가 함께 동석할 필요가 있다.
-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가 가능해도 진술서 작성 시는 통역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통역사에게 비밀보장을 할 것을 요구하고 서약서 등을 받는다.

○ 피신고인 (가해행위자)

- 가해행위자는 진술서 및 출석 진술을 통해 스스로를 변호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조사 절차 진행 및 조사 종결 후, 사건 내용과 관계자들의 신상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 일반적으로 가해행위자들과 피해자들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다르다. 따라서 자신의 입장과 관점만 주장하다 보면 사건을 은폐하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가해행위자의 관점에서 충분히 소명하되 피해자의 입장과 심정을 이해하며 자신의 행위를 소명해야 한다.
- 가해행위자는 사건 해결이 목적이라 할지라도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 및 보복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 제3자 (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목격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사건 경위를 진술해야 하고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할 때는 개인적인 관점과 친밀함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해야한다.
- 학과, 부서차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공간분리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 교내 인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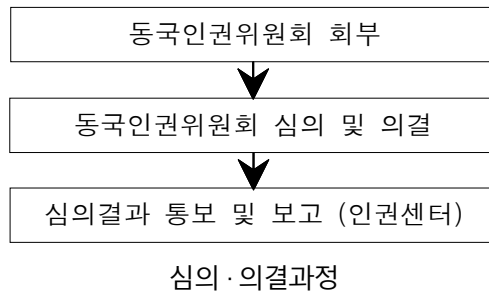
- 조사과정중에도 상담을 병행하면서 신고인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 하여야 한다. 피해자보호가 최우선이므로 신속한 해결과 조사절차 진행을 위하여 피해자의 결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조사신고는 상담과 달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여 사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 공간 분리는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조치하는 기본적인 조치이므로, 늦어도 조사시점에서는 신고자와 가해행위자의 공간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학과, 관련부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조사는 있었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상황에 대한 조사관이나 조사위원의 판단이나 생각을 말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한다 (조사의 핵심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임).
- 조사위원(또는 상담원)은 조사 시 피해자, 가해행위자, 제3자를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추가 자료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진술을 청취할 때는 관련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하는 것이 좋다.
- 조사위원(또는 상담원)은 피해자와 가해행위자 진술 간에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여 사건에 대한 통합된 관점을 확보해야 한다.
- 조사위원(또는 상담원)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해행위자에게 질문할 경우 질문 내용에 사건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지 주의해야 하며, 사건 내용을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해야 한다.
- 상담원, 조사위원, 동국인권위원회 위원 등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행위자 징계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및 행위자 등 관계자의 신원과 신청 내용 등에 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밀 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조사위원(또는 상담원)은 피해자, 가해행위자, 제3자 등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통합된 개요를 구성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 피해자에게 조사 및 심의과정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반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상담 단계에서 상담원은 조사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피해자가 처리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 전체 처리 절차와 비밀보장 방침, 상황에 따라 어떤 정보 노출이 발생할 지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

바. 심의·의결

사건처리에 있어서 조사위원회를 거쳐 동국인권위원회가 소집된 경우 사건의 행위자에 대한 각종 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피해자와 피신고인의 교내 활동이 겹치지 않도록 공간분리 조치,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가 있다. 또한 집단적 문화의 영향으로 발생한 경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및 성인지 교육프로그램의 참여, 치유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권고 등으로 이루어지며, 성희롱·성폭력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행위자의 가해행위가 현행법령, 학칙, 인권센터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징계권고가 내려지고, 성폭력이나 성추행,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의 경우 심의 후 고발조치도 이루어진다.



○ 동국인권위원회 구성

- 동국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7/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 동국인권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위원 중 2명 이상은 외부 성희롱,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좋다.
- 대학은 교원, 직원, 학생 등 구성원이 다양하다. 따라서 위원을 위촉할 때 다양한 구성원이 포함되게 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학생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하거나 배석자로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 중에 사건 당사자와 관련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서 제척해야 한다.

○ 조사위원회 및 동국인권위원회의 역할

- 인권센터는 조사위원회를 거쳐서(필요시) 동국인권위원회에 사건을 상정한다.
- 위원은 사건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고, 필요한 경우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 위원회는 피해자 및 가해행위자, 제3자 등의 진술내용,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등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성희롱·성폭력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위원회는 사건을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심의하며 신고인(피해자)이 건강하게 대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과 보호조치를 논의한다.
- 위원회 위원이 부적절한 질문을 하여 신고인이 2차 가해로 여기거나 피신고인이 심의 위원회의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지 않도록 위원회 소집 안내 시 위원들에게 유의사항을 적시하여 안내한다.

- **동국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조약, 관련 법령, 동국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성희롱 성립에 대한 대법원 심의 원칙(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기타판례, 국가인권위원회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인권센터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와, 필요시 피신고인 진술 등에 대한 확인과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 대법원 판례 요약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많은 미투(#MeToo)선언 이후 성희롱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진일보하였으며 각급 법원의 성희롱사건 판결의 지침이 될 중요한 판례이므로 소개하고자 한다.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

-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

-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 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 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사. 징계

동국인권위원회에서 사건이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의결되면, 위원회는 징계를 권고하고, 인권센터는 즉시 징계담당 부서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 신고인 (피해자)

- 학교는 피해자의 학습권과 근로권을 보호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한다.
- 신고인이 징계위원회 징계결과 등을 수용하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불편함, 어려움을 느끼거나 징계처리 결과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센터에서는 피해자 입장과 피해자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 **피신고인 (가해행위자)**

- 피신고인에 대한 처분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행위자의 재발방지 교육, 공간분리, 징계, 고발 등이 있다.
- 동국인권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피신고인의 가해행위가 인권센터 규정, 학칙, 현행법 등을 위반한 경우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징계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건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대학 징계 규정을 바탕으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며 상벌위원회(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여 괴롭히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해당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피해자나 참고인 및 신고인에게 보복을 하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거나 불이익을 끼쳤을 때에도 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 할 수 있다.
- 피신고인들(가해자)의 다수는 사건처리 결과가 수용이 안 되어, 억울하고 화나며 주변으로부터의 비난과 낙인 등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심리 상담을 통해 심리 상태를 탐색하고 성찰하여 결과를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재통합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받도록 한다.

○ **인권센터**

- 동국인권위원회 결과를 신고인 및 피신고인(가해행위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사자의 확인을 받는다.
- 동국인권위원회 심의결과 징계가 결정된 경우 인권센터는 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담당 부서에 가해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다.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완료시까지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 피해자 및 가해행위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2차 피해 발생 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징계결과를 학내 구성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아. 형사고소, 고발과 징계

학교는 형사절차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학교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징계(행정벌)와 형벌은 병과 할 수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형사사건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처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형사처벌과 징계는 병과 할 수 있다.

- 이러한 원칙은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대법원 1984.9.11. 84누110 파면처분 취소 판결). 또 대법원은 “징계혐의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사실의 인정이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또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참조).

○ 신고인 (피해자)

- 피해자가 외부 기관을 통해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국가인권위원회 등) 대학에서 사건 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 ※ 학생과 학생 간에 일어난 성희롱 사건 등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실효성이 없어 학교 인권센터에서 담당한다.
- 형사고소를 할 경우 사전에 대학 인권센터에 형사고소의 취지에 대해 알리고 2차피해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 가해행위자

- 형사고소가 통보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대학의 징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담당부서에 징계처분불복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자 (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피해자, 가해행위자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결과를 지켜보고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인권센터

- 형사고소가 되는 경우에도 이와 무관하게 사건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에게 이를 정확하게 고지해 준다.
-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자. 피해자와 가해자 공간분리

교수와 학생 간에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등의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대학 차원에서 책임지고 마련하지 않는 한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사건의 예방과 해결은 어렵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 공간 분리는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조치하는 기본적인 조치이다.

성희롱·성폭력 등의 문제는 2차 피해 예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선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 단계에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진로·학업 등 모든 방면에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학교가 책임을 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많은 경우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해명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부터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현행 동국대 인권센터 규정에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보호를 인권센터의 주요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규정 제6조), 또 인권센터장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추가 인권침해 발생 예방조치, 피해자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제17조). 이 규정을 근거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피신고인(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으로 부터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 조치가 가능하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사항으로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항).”고 하여 조사기간에도 공간분리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2018.11.27. 대통령령 제정)을 제정하여 정부 부처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인사권자(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조사 과정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보호조치를 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하고**, 가해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뿐만 아니라 승진심사 대상 제외, 최하위 성과등급 부여, 주요 보직제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관리자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스쿨미투'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며, 사립학교 교원 성희롱·성폭력도 국공립 수준 징계 추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교내 인권센터에서는 성희롱 관련법령, 동국대 인권센터 규정,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등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 시에는 조사 이전이라도 해당 학과나 관련 부서에 가해자와 공간분리, 2차 피해방지 등 피해자 보호대책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따라 해당 학과나 부서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제재, 그리고 관리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국대 인권센터).

차. 직권조사의 개시 및 조사방법

동국대학교 인권센터는 2018년 12월 규정개정을 통하여 직권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직권조사의 개념 및 의의, 직권조사 개시 단서, 직권조사 실시 및 처리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직권조사 개념 및 의의

-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교직원과 학생 사건, 학생과 학생 사이 사건 등, 인권센터 규정 제21조).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신고가 없어도 사건인지 즉시 조사를 개시하도록 하여 성희롱 관련 조사 및 구제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교직원간 사건).
-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에 취약한 집단은 (학생, 여성, 장애인, 소수자 등) 그 피해사실에도 불구하고 권력관계, 위계관계,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국대 인권센터는 직권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취약 집단의 피해를 신속하게 방지 및 구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직권조사의 개시 단서

-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관련 중대한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
- 신빙성 있는 익명의 제보 및 상담종결사건
 - 인지 또는 접수된 제보의 성격상 그 피해내용이 중대하고 상당한 신빙성이 있으나, 신고인 등이 자신의 신변노출을 꺼려하거나 제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익명으로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실명으로 신고하였더라도 보복 등의 사유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각하, 철회, 조사중지를 하더라도, 피해사실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직권조사를 실시 ※ 기초조사 후 제보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경우 직권조사 실시
 - 인권상담으로 종결하였으나,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고 인권침해의 재발가능성이 높은 경우 직권조사 개시 검토
- 중대한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관련 유사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신고된 사건이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 동국대학교 내 다른 부서에서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등

3) 직권조사 처리절차

가) 직권조사 계획수립

○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직권조사 개시요건 검토

- 제3자의 제보, 언론보도, 제보, 소문 등에 의해서 중대한 인권침해(차별행위 포함),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드러나면, 인권센터장은 인권센터 상담원(조사관)으로 하여금 기초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사관은 직권조사계획서를 작성한다.
- 직권조사계획서에는 직권조사의 필요성, 사건의 개요, 직권조사요건 충족, 주요 직권조사대상(피해자, 가해자, 참고인 등),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이 포함 되도록 한다.

나) 직권조사 개시결정

- 직권조사계획이 수립되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조사 한다.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인권센터의 규정에 따른다.
- 직권조사가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직권조사 결정사실을 관련자(기관) 등에 통보한다.

다) 직권조사의 실시

- 직권조사의 방법은 현행 인권센터 조사과정에 관한 조항이나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신고사건은 신고된 사실에 국한하여 조사하여야 하나, 직권조사는 인권센터가 인권침해나, 성희롱·성폭력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는 사실에 대해서 조사대상과 조사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보다 폭넓게 연관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신속하고 원활한 조사 여건을 보장 받을 수 있다.
- 피조사자에 대해서 직접문답을 받는 경우, 문답 종료 후 진술인에게 문답전문을 읽게 한 후 진술과 다른 부분은 정정토록 하고, 이를 확인한 사항을 문답서 끝에 서명날인(무인) 하도록 한다. 문답서에는 피조사자의 도장(무인)이나 서명으로 간인하도록 한다.

라) 조사결과보고

○ 조사를 종료한 후 인권센터는 사건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동국인권위원회에 상정한다.

- 직권조사 보고서는 인권침해 등의 일반 사건조사보고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 조사결과 처리도 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조사결과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사종결을 하고,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하게 되거나,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게 되는 경우, 기타 유사한 사유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조사를 중지한다. 직권조사의 경우에도 피신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 한다 (동국대 인권센터).

카. 피해자보호, 비밀유지 원칙

- 동국대 인권센터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상담,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신고인 등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인권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과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인권센터규정, 제29조, 제32조).
- 또한, 신고도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이나 대리인, 또는 침해 내용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15조),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피신고인 등에게 인권침해 즉시 중지, 추가 인권침해 발생 예방 조치, 공간분리 등 피해자 보호조치 등 필요한 임시조치를 통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인권센터 규정 제17조).
- 그 외에도,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외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인권센터에 요청할 수 있으며(제29조), 가해자가 신고인 및 참고인 등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 가해자가 신고인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거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가중징계토록 하고 있고(제25조, 제28조),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중재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임시조치나, 구제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 향후 인권센터에서는 교내 모든 부서, 학생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교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최우선을 두고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04

성희롱·성폭력 관련 주요 상황별 사례 및 대응방안

4. 성희롱·성폭력 관련 주요 상황별 사례 및 대응 방안

가. 2차 피해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피해자는 사건 처리의 부담으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2차 피해를 당하면 불안감, 두려움 등 정신적 피해가 더해져 사건처리에 부담을 갖게 된다. 2차 피해의 실제 유형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2차 피해 정의

- 2차 피해란 일반적으로 범죄피해 이후 가족, 친구, 언론,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겪게 되며, 따라서 사람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민감하고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탐색하게 된다.
- 2차 피해는 이런 상태의 피해자에게 주변인이나 가해행위자가 말이나 소문 등으로 2차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며, 피해자 및 가해행위자가 사건을 인지하고 해결을 위해 행동하게 되는 시점부터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놓이게 되면 사건의 본질을 해결하는데 큰 장애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교육부, 2018).

2) 2차 피해 유형

○ 피신고인 (가해행위자)

- 사건 내용을 누설하거나 사건 관련인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 또는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헐담하거나 피해자를 탓하거나, 상급자에게 피해자 보다 먼저 보고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는 행위, 그리고 지지자 그룹을 만들고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원치 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 사건 합의를 집요하게 요청하는 행위

○ 제3자 (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피해자 및 가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주변에 알리고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외모나 품행 등을 헐담하고 비난하는 행위,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하고 문제 삼는 행위나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평가 또는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권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그리고 행위자를 지지하고 두둔하는 행위 등

○ 학교 인권센터

- 사건접수 또는 조사 내용 유포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 피해자 조사 시 부적절한 질문이나 태도를 보이거나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행위
- 가해행위자의 행동을 옹호하거나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 피해자와 가해행위자 간의 화해나 합의를 중용하는 행위 등

3) 2차 피해 대응방식

○ 신고인 (피해자)

- 학습권과 근로권 보호를 대학에 요청하고 2차 피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주장할 수 있다.
- 가해행위자를 직접 만나 해결하기보다 학교 인권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입장과 어려움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

○ 피신고인 (가해행위자)

-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학교 규정에 따라 2차 피해의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기보다는 인권센터를 통해 자신의 입장과 해결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 용서와 합의 역시 피해자의 선택임을 인지하여 합의를 강요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 제3자 (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사건을 피해자의 평소 태도, 능력, 성격 등 편견을 근거로 말하지 않고,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비밀을 유지하고 소문내지 않는다.
-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걱정이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묻거나 이야기 하지 않고, 가해행위자를 옹호하거나 편을 들지 않는다.

○ 학교 인권센터

-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 공간 분리는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조치하는 기본적인 조치이므로, 신고자와 가해행위자가 공간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학과,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조사 및 위원회 심의 및 인권센터의 조치가 끝난 후에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 해야 한다.

- 사건조사에 협력한 조력자들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가해행위자와 공간분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조치해야 한다.
- 가해행위자에게 후속조치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교육하며 이때 2차 가해행위 금지와 가중 처벌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 교원 및 전 재학생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예방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인권센터는 학교당국과 협의하여 성희롱·성폭력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학생은 수강신청 시 예방교육을 선이수하도록 하든지, 학기말 예방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만 성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직원들은 의무교육이므로 교육 미이수 교직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나. 교수에 의한 학생 성희롱/성폭력 사례 및 상황별 대응 매뉴얼

○ 개요

- 강의 내용은 교수의 권한 영역이지만,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교육하는 것은 대학의 교육 방향에 위반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 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업 내용과 관련된 성차별 등 인권침해 관련 이의 제기를 받는다면, 단 한 명의 이의제기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후 수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 교수-학생 간 사건 또한 학생-학생 간 사건의 방식과 형태의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모든 사건이 위력에 의한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이다.
- 노동시장 진입의 마지막 관문으로서 대학생활을 보내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수는 경쟁 사회에서 본인의 스펙을 보장하는 학점을 주는 당사자이자, 취업 및 진학에 필요한 추천서의 작성자일 뿐 아니라, 직업세계에서 본인의 평판을 좌우하는 평가자이다. 이처럼 학생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 갖는 교수의 영향력과 권위를 고려할 때, 교수-학생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 학생의 대응 수위와 적극성은 현저하게 제한될 수 있다.
- 따라서 교수-학생 간 사건에서는 교수의 권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의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하며,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철저히 예방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 외 추가피해의 발굴과 공동의 대응 등 방식 또한 피해자의 사건 해결의지를 독려하고, 보다 명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여기서는 교수-학생 간 사건으로 네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먼저 수업 및 상담에서의 언어적 성희롱으로 교수-학생 간 성희롱·성폭력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다. 나머지 세 가지 사례는 각각 술자리에서 발생한 교수의 성폭력, 논문지도/

레슨에서 발생한 교수의 성폭력, 진로상담에서의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그 차이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소개 한다 (자료: 교육부, 2018).

1) 수업 및 상담에서의 언어적 성희롱

가) 사례

(사례1) A는 친구들과 사이에서 인기 있는 선택 교양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다. 수업 첫 날 교수님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지켜야할 몇 가지 규칙들을 안내해 주셨다. 교수님이 마지막 규칙을 이야기할 때 A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을 느꼈다. 교수님은 ‘여기 대학 다니면서 CC 한 번 못하는 바보 있어요? 우리 수업은 여학생이랑 남학생이랑 활동할 기회를 많이 줍니다. 틈틈이 수강생 중에 맘에 드는 사람이 있는지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힘들면 내가 연결해 줄 테니까 찾아와요’ 라고 말했다. 수강생들은 일제히 크게 웃었고 어떤 남학생들은 웃으며 큰소리로 대답하기도 했다.

교수님은 한 학기 내내 수업 시간 마다 ‘학생들의 연애’ 이야기를 하셨다. 한번은 수업 중에 진해 군항제 이야기가 나오자, 한 여학생을 가리키며, ‘가봤냐’고 물어보고는 ‘남자친구랑 자러 간 것이냐, 벚꽃을 보러 간 것이냐’고 물으면서 ‘커플이 돼서 여행 가는 사람들은 미리 말해주면 수업에 안 와도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학생의 외모와 몸매에 대한 품평도 서슴없었다. 몸에 붙는 옷을 입거나 짧은 옷을 입는 날에는 ‘네 몸매가 그렇게 예쁜 줄 몰랐네’라고 말하거나, ‘다리가 늘씬한 게 시원해서 보기 좋네’라고 하고, 붉은색 립스틱을 바른 어느 여학생에게는 ‘남자친구가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각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A는 교수님의 발언이 성희롱이라고 확신했지만, ‘내가 문제제기했을 때 성적을 나쁘게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사례2) 00학과의 전공 필수 수업은 수강생과 교수님이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여 수업 분위기가 밝고 화기애애하다. 어느 날 교수님은 ‘오늘은 조교가 없으니 B가 커피를 사와라’라고 말씀하셨다. B가 교수님에게 커피를 가져다 드리자 교수님은 ‘B가 사다주는 커피가 더 맛있네’라고 말씀하셨다. B는 처음 듣는 교수님의 표현에 당황했지만 고맙다는 인사라고 생각하며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들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은 B에게 ‘B가 심부름을 잘 하네. 앞으로 내 커피는 네가 사다줘’라고 말씀하셨다. B는 웃으면서 ‘네’라고 대답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를 뒤 수업 시간에 B는 교수님의 부탁으로 다시 커피를 사다드렸다. 교수님은 수업이 끝난 후 B를 불러서 고맙다고 인사하시며 ‘이상하게 듣지 마라. 네가 심부름 잘해서 진짜 예쁘다’라고 말씀하셨다. B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고학번 선배에게 교수님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B가 선배에게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발언을 못 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조교는 B에게 ‘앞으로 심부름은 내가 다 할게. 네가 다시 그런 말

안 듣게 하면 되잖아'라고 말했다. B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 앞으로 교수님 수업을 듣지 않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례3) 인간의 신체 발달과 관련된 수업을 수강하고 있었다. 교수님은 인간의 성을 주제로 강의하시면서 학생들에게 '남자들은 틈만 나면 새로운 짝을 찾게 되어있다. 성폭력도 다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셨다. 수업을 듣던 몇몇 학생들은 수업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교수님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편견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하자 교수님은 '과학적인 설명이므로 내 말이 틀렸다는 사람은 내 앞에서 논증을 해라'라고 말씀하셨다. 교수님은 수업 내용을 다른 주제로 바꾸려고 하셨지만 학생들은 남은 수업 시간 동안 계속 항의를 했다. 수업시간이 끝난 후 교수님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시며 '수업 내용에 반감을 가진 학생들이 있는 것 같다. 내 수업을 듣기 싫은 사람은 다음 시간부터 나오지 마라'고 말씀하셨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강의실을 나간 후 서너 명의 학생들이 강의실에 남아 교수님의 발언을 신고하자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교육부, 2018).

나) 사건인지 이후 대응단계

(1) 피해자

○ 사건처리 방법 모색

- 수업시간에 겪은 교수의 언어적 성희롱 상황에 대해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논의하거나 학교 친구, 선배 등 주변의 신뢰할만한 사람과 상의한다. 교수의 일대일 성희롱의 경우에도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뢰할 만한 사람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해결방법을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교내 인권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처리방안에 대해서 도움을 받도록 한다. 인권센터는 공식적 사건 심의 처리나 중재 등이 가능하며, 심리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증거 확보

- 교수의 발언 중 본인이 불쾌감을 느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교수의 발언에 대하여 다른 학생들은 성희롱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성희롱으로 인지했다면 그 맥락을 잘 서술하여 기록한다.

○ 문제 제기

- 문제 발언을 들은 즉시 수업시간 또는 수업 종료 후 교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만약 성적 불이익 등이 걱정될 경우에는 학교 인권센터에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먼저, 인권센터에 신고를 하고,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사건 진술 등의 절차를 마친다.
- 학생회 등을 통해 학내 이슈로 공론화할 수도 있다.

(2) 가해행위자 (교수)

○ 사건 예방

- 선한 의도의 언행이라고 하더라도 수업과 무관한 성(性) 관련 언행은 수강생의 입장에서 심각한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본인 스스로도 성차별적, 성폭력적 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채 발언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수강생들을 성적인 존재로 대상화하는 발언을 삼가야한다. 수강생들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거나, 개인의 외모 평가, 연애편계 등 지나치게 사적인 발언은 자제하도록 한다.

○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의 입장을 경청한다. 본인 발언의 의도를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학생이 불쾌감을 느낀 사유에 집중하여 상황을 인지하도록 노력하고, 문제가 인지되었을시 사과한다.

○ 재발방지

- 강의 내용은 교수의 권한 영역이지만,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교육하는 것은 대학의 교육 방향에 위반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 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업 내용과 관련된 성차별 등 인권침해 관련 이의 제기를 받는다면, 단 한 명의 이의제기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후 수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3) 제3자 (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심리·정서적지지

- 사건해결을 위해서 조교로서 수업 중 언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을 면담하는 경우, 본인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없더라도 학교 인권센터나 학과 교수님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조력한다.

○ 학내 공론화

-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대자보 등을 통해 교내 이슈로 공론화할 수 있다. 사건과 무관하게 학생 성폭력에 대한 캠페인과 다양한 사례 수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학생 상담 및 학과 조치사항

- 수업시간에 수업 목적과 관련 없는 성적 발언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학과, 단과대, 학교 차원에서 안내물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 학교 교수 또는 동료 교수의 수업 내 문제 발언을 인지했다면, 상담해 온 학생에게 개입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원한다면 일차적으로 사건조사기관인 인권센터에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 교수의 사과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되, 무리하게 양자간에 합의를 이끌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학내 근거규정이 정하는 범위에 한해 가해 교수와의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과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한다.
- 가해행위자가 피해 학생의 해당과목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학과 안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학과 교수들의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성희롱 예방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반드시 수강토록 조치한다.

(4) 학교 인권센터

○ 조치사항

- 사건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바가 비공개 상태에서 가해자의 사과만을 원할 수도 있고, 비공개 상태에서 가해자의 행위를 학과에 전달하거나, 경우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원하는 바를 경청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한다.
- 학교에서 성희롱, 성폭력을 인지했다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건조사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 등으로 사건조사나 징계 처리가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만약, 피해자가 비공개 처리를 원할 경우 신고인의 신원을 보호하여 인권센터에서 직접 가해행위자를 만나서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를 하도록 중재한다.
- 늦어도 조사시점에서는 신고자와 가해행위자의 공간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학과,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사건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 학내에서 발생하는 수업 중 성희롱 사건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 중 언어 성희롱을 예방하는 다양한 안내 조치들을 실시한다. 관련 내용에 대한 브로셔를 만들어 배포할 수도 있고, 교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탑재하여 의무로써 시청을 할 수도 있으며, 관련 내용을 이메일로 배포할 수도 있다.
- 우리 학교 인권센터에서는 매 학기말 학생들이 무기명으로 진술하는 수업 중 성희롱 사례를 수집 및 정리하여 직원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향후 해당학과와 부서에 송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토록 권고 내지 의견을 표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2) 술자리에서 발생한 교수의 성추행 등 성폭력

가) 사례

(사례1) 석사과정생인 C의 지도교수님은 주 1회 이상 연구실 학생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다. 일부 대학원생 선배들은 교수님의 회식 문화를 좋아해서 연구실에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 석사 1학기에 재학 중인 C는 연구실에 빨리 적응하기 위하여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교수님이 주도하는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그러나 처음으로 2차 회식에 따라갔던 자리에서 C는 평소 볼 수 없던 지도교수님의 모습을 목격했다. 교수님은 박사과정 여학생들과 러브샷을 하며 술을 마셨고, 석사과정 여학생들에게 기대거나 팔짱을 끼기도 하셨다. 교수님은 수업과 프로젝트 운영을 동시에 하느라 매우 힘들다며 학생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C는 교수님의 상황이 이해가 되고 안타까웠지만 여학생들과의 스킨십은 지나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C는 교수님이 동기 여학우의 손을 잡으려고 할 때 마다 본인이 먼저 교수님의 손을 잡는 식으로 교수님을 제지했다. 회식이 끝나고 교수님이 집으로 돌아가신 후 선배들은 C를 향해 ‘오늘 수고했다’고 이야기했다. C는 복잡한 마음에 다음 날 학과장님을 찾아가서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학과장은 C에게 ‘요즘 000교수가 많이 힘들다. 네가 원한다면 연구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C는 연구실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대학원 생활에서 연구실 사람들과 지도교수님을 계속 볼 자신이 없다는 생각에 고민이 되었다.

(사례2)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던 D는 학교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자원봉사를 하였다. 대학원생들의 분과별 세미나 진행을 도우며 본교와 타교의 대학원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행사가 끝나고 여러 학교의 도우미들이 모여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회식을 마친 교수님 몇 분이 호프집으로 찾아왔다. D는 막차가 끊기기 전에 돌아가기 위하여 교수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호프집을 나왔다. 이때 평소 잘 모르던 A교수님이 D를 쫓아왔다. 교수님은 D에게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말하며 D의 손목을 잡고 다시 호프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D는 막차를 타야한다며 교수님의 제안을 거절했고 교수님은 ‘내가 싫으냐’며 D에게 집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D는 그 자리를 겨우 빠져나왔고, 며칠 뒤 A교수님에게서 ‘그 날 일을 이야기하고 싶다. 오늘 내 연구실로 와라’ 라는 문자를 받았다. D는 A교수님을 찾아가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너가 착하고 괜찮아서 지켜보고 있었다. 졸업하면 내 밑으로 와라. 교수가 될 때까지 너를 키워주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D는 교수님에게 자신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쁜 마음이 들었다. 그 날 교수님은 D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셨고 D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식사가 끝난 후 D는 교수님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술자리에서 교수님은 ‘가까운 사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시며 D의 손을 잡으셨다. D는 교수님의 행동에 당황하였으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 순간 며칠 전 학술대회 뒤풀이에서 교수님이 자신의 손목을 잡으며 ‘내가 싫으냐’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고, 교수님이 자신을 제자로서 대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집안일을 핑계로 술자리를 빠져나왔다. D는 대학원 학생들에게 오늘 일을 상담하고 싶었지만, 교수님과 단둘이 술자리를 한 것이 알려지면 이상한 소문이 날 것 같아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다 (교육부, 2018).

나) 사건인지 이후 대응단계

(1) 피해자

○ 사건처리 방법 모색

- 학교의 공식행사 이후 이어지는 뒤풀이 자리에서 겪은 교수의 성추행 상황에 대해 학교 친구, 선배 등 주변의 신뢰할만한 사람과 상의하고, 주위 사람의 지원을 통해 자신을 위해서 어떤 해결 방법이 좋을지 결정한다.
-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학교 내 인권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처리 방안에 대해서 도움을 받도록 한다. 인권센터는 공식적 사건 심의 처리나 중재 등이 가능하며, 심리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증거확보 및 조치사항

- 불쾌감을 느낀 피신고인의 행위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정리한다. 기록은 되도록 육하원칙의 내용이 충족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망각의 효과를 받지 않도록 사건 종료 즉시 최대한 빨리 기록을 남긴다.
-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해행위자를 일대일로 만나지 않는다.** 만남이 불가피하다면, 되도록 2명 이상 만나도록 한다.

(2) 가해행위자

○ 사건예방

- 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하거나 사적 목적의 만남을 제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교수의 윤리를 벗어나는 비교육적인 처신이므로 주의한다.
- 교수와 학생들 간에 다년간의 친분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수는 학생에게 성적 평가, 진로 지도, 취업 추천 등의 권한을 갖는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 따라서 교수들은 학생들과 친분에 의해 술자리를 갖는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권력 관계에 의한 비자발적인 만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 학생에게 직접 문제제기를 받는다면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사과하고 학생의 입장을 경청한다.

○ **대응 시 주의사항**

- 음주 후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가해행위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사건 축소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성범죄행위에 해당함을 인지**

- 교수의 제자 성추행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처해진다. 교수의 제자 성폭행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해당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 제303조 제1항).
-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인 교수가 대학교에서 레슨을 받으러 온 피해자(여, 18세)에게 “술은 마실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듯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사제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판례가 있다 (울산지방법원 2014.6.19. 선고 2014고단 95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1.16. 선고 2013고단6624 판결). (교육부, 2018)

(3) 제3자(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사건 발생 시 대응**

- 술자리에서 교수의 부적절한 접촉이나 추행 등 성폭력 행위를 인지한 경우, 가해행위자 또는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서 즉각 가해를 중단시킨다. 이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사항이 있다면 조력하고,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수사기관이나 교내 인권 센터에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피해자 본인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므로 제3자는 신고 전에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현행 규정상 제3자가 신고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를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와 가해행위자가 일대일로 만난 술자리에 대한 제3자의 의심이나 추측성 발언 및 이를 퍼뜨리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 학과 조치사항

- 교수가 참석하는 수업 뒤풀이 또는 학과(연구실) 단체회식 자리는 학생의 학업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공식적인 성격을 갖는 모임이다. 따라서 목격자, 동료 또는 학생회 등은 이러한 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면 교수의 사적인 실수에 그치지 않는 문제임을 인지하고, 피해자나 제3자의 제보를 받았을 때, 피해자의 문제제기 의향을 확인하고, 학교 인권센터로 연계하여 해결토록 한다. 학과가 자체적으로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종결을 짓지 않도록 하고, 학과 내에서 조치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공개로 논의하도록 한다.
-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해행위자와 공간적 분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가해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공간분리의 한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사건에 대한 조사는 학교 인권센터에 맡기되, 학과 학생, 또는 해당 교수의 수강생 및 전공생 사이에서 유사사건이 있는지 학과의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학과 내 잘못된 음주 문화 근절을 위한 불필요한 회식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 미성년자 신고의무로 19세 미만 학생에 대해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학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4) 교내 인권센터

○ 증거확보

- 피해자 외에도 제3자등과의 상담 및 진술서 등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 진술을 최대한 확보한다. 피해자와 가해행위자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하고 문자나 모바일 메신저, CCTV 등 관련 기록들을 모두 확인한다. ※ 이와 같은 조사는 음주 후 성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사례에 해당한다.

○ 피해자에 대한 조치사항

- 피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기억이 없다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만약 피해자가 음주 후 정신을 잃었다면 산부인과 진료를 받도록 하고 약물 이용 범죄 또는 촬영 범죄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찰 신고를 권유 한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인권센터는 조사 결과 성추행이나 성폭력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다.

○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

- 피해자가 가해 교수와의 접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업배제 등 공간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가해행위자에게 알리고,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등 2차 피해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행할 경우 징계처분 시 가중징계 될 수 있음도 알린다. 늦어도 조사시점에서는 신고자와 가해행위자의 공간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학과,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문제제기

- 다수의 인원이 목격한 사건에서 공동체 내 배제 등을 두려워하며 참고인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추가 피해자가 많아서 진술을 두려워하거나, 가해행위자의 권위적인 태도로 진술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유일 수 있다. 파악된 결과에 따라 신고자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 학교차원에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미성년자 성폭력피해 신고의무

- 피해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학교나 시설 및 해당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사건 발생을 인지한 순간, 수사기관(경찰)에 즉각 신고할 의무가 있다.

3) 논문지도/레슨에서 발생한 교수의 성추행 등 성폭력

가) 사례

(사례1) 체육계열 전공자 E는 전공 수업을 들을 때마다 A교수님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교수님은 E를 지도하면서 E의 운동 자세가 나쁘다며 종종 화를 내셨다. 그럴 때마다 E는 과 학생들 앞에서 자주 혼나는 것이 몹시 창피했다. 어느 날 E는 A교수님에게 '개인 지도를 해줄 테니 주말에 집으로 와라'는 연락을 받고 교수님의 집으로 찾아갔다. 교수님은 E의 동작을 봐주시며 E가 개선해야 할 점을 자세하게 알려주셨다.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 교수님은 E에게 '남자친구가 있나? 남자친구에게 자주 근육마사지를 받아라'고 말했고 E는 '남자친구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교수님은 '나도 마사지 잘한다'고 하시며 E의 다리를 주무르셨다. E는 교수님의 손을 피하고 싶었지만 '수업 시간에 하던 건데 왜 그러냐'는 교수님의 말씀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교수님은 자세 교정을 해준다고 E의 다리와 허리, 어깨 등을 만지기도 했다. E는 교수님의 행동을 피하기 위해 '병원에 가서 교정을 받고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교수님은 '오늘 집에 아무도 없다. 더 있다 가라'고 하셨고 E는 교수님의 제안을 거절해도 괜찮은지 고민이 되어 평소 같이 훈련하던 선배에게 문자를 보냈다. 선배에게 '당장 그 집에서 나와라'는 답장을 받은 E는 바로 교수님의 집을 나섰다. 다음 날 E는 선배를 만났고 선배에게 '그 교수님 소문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선배는 E에게 '다시 교수님에게 연락 와도 가지 말아라. 신고하고 싶다면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E는 본인이 겪은 일을 성추행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교수님은 전직 유명 운동선수였기에 신고하면 파장이 매우 클 것 같았다. 교수님은 그 날 이후 더이상 E를 수업 시간에 혼내지 않으셨고 가끔씩 '이번 주말에 집에 와라', '뭐하니'라는 문자를 보내셨다. E는 선배의 말대로 신고하고 싶었지만, 운동계에 소문이 날까 두려운 마음이 커져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 뒤, E는 교수님에게 '이번 주에 집으로 꼭 와라.'

개인지도 안 받으면 기말 평가를 해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고,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생각이 들어 학교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사례2) F는 논문 심사를 앞두고 전체 대학원생들이 참석하는 1박 2일 워크숍을 갔다. 워크숍에 참여하는 졸업 예정자들은 학생들과 교수진 앞에서 논문의 주제와 연구방법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워크숍 일정이 밤늦게 끝났고 F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혼자 숙소로 돌아갔다. F가 잠들려고 할 때 지도교수님이 F에게 전화를 걸었고 '논문 이야기를 해야 하니 내 숙소로 와라'라고 하셨다. F가 '내일 아침에 찾아 뵙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교수님은 지금 바로 본인의 방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F가 계속 거절하자 교수님은 '그럼 내가 네 방으로 가겠다'고 하셨고, 당황한 F는 발표했던 논문 자료를 꺼내놓고 교수님을 기다렸다. F의 방으로 온 교수님은 본인의 결혼생활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며, F에게 안아달라고 했다. F는 교수님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교수님은 F를 끌어안으며 '이 방에서 자고 가도 되냐'고 말했다. 당황한 F가 '논문 이야기하러 오신 것 아니었냐'고 하니 교수님은 '논문도 나랑 친해져야 쓰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다. F는 자신을 성추행하는 교수님을 피하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지만 다른 원생들이 이 상황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큰 소리를 내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교수님은 자신을 피하는 F에게 직접적으로 성관계 의사를 물었고, F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본인의 숙소로 돌아갔다. F는 이날 일을 생각하면 다시 지도교수님을 뵙고 싶지 않았지만, 교수님에게 원망을 사거나 졸업하지 못하면 몇 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생각에 버티기로 마음먹었다. 몇 달 뒤 F는 졸업을 했지만, 이 일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고,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취직한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게 되었다. F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용기를 내어 교수님에게 전화했고 '논문 워크숍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받고 싶다'고 말했다. 교수님은 '미안하다. 이미 지난 일이니까 다 잊고 잘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F는 교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교수님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F는 교수님의 진정한 사과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 사건을 학교에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교육부, 2018).

나) 사건인지 이후 대응단계

(1) 피해자

○ 사건처리 방법 모색

- 논문지도나 레슨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수의 성추행 상황에 대해 학교친구, 선배 등 주변의 신뢰할만한 사람과 상의하고, 주위 사람의 지원을 통해 자신을 위해서 어떤 해결 방법이 좋을지 결정한다.

- 해결방법을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교내 인권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처리방안에 대해서 도움을 받도록 한다. 인권센터는 공식적 사건 심의 처리나 중재 등이 가능하며, 심리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증거확보

- 교수와 단둘이 만나게 된 경위를 포함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 주고받은 대화, 행동 등 사건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만약 녹음이 가능하다면 이를 증거로 남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단, 녹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도청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한다.

○ 조치사항

- 학교 인권센터를 방문한다고 해서 해당 사건이 신고, 조사, 징계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아니다. 사건의 모든 처리는 피해자의 의향을 고려하게 되므로 공개나 사건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인권센터를 방문하여 처리방안에 대해서 도움을 받도록 한다.

○ 가해자에 대한 대응

- 가해행위자가 만남을 원하는 경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거절하고, 논문 지도 등을 사유로 불가피하게 만나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거나 학우와 동행한다. 의사소통 과정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되도록 통화보다는 문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통화의 경우에도 증거를 남기도록 한다.

○ 참고사항

- 가해행위자가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면 졸업생 또는 타대생도 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학교 구성원이고 가해자가 외부인일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2) 가해행위자

○ 사건예방

- 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하거나 사적 목적의 만남을 제안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교수의 윤리를 벗어나는 비교육적인 처신으로 해석되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
- 교수와 학생들 간에 다년간의 친분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수는 학생에게 성적 평가, 논문 심사, 진로 지도, 취업 추천 등의 권한을 갖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수와 학생 간의 만남을 이러한 권력관계에 근거한 비자발적인 만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 피해자에게 사과 요청을 받는 경우 피해자가 설명한 잘못에 대하여 솔직하게 사과한다.

○ **성범죄행위에 해당함을 인지**

- 수업, 개인지도, 논문지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교원의 권한을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 가해행위자에게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는 사안이므로 학교의 조치에 따라 조사 및 이후 절차에 성실히 임한다.

○ **2차 피해 방지**

- 사건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의 학업이나 개인 평판 등에 교수로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 2차 가해 또는 교원 품위 위반이 될 수 있다.

○ **주의사항**

- 공개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면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자리를 갖고,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되, 변명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수강생들이나 지도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유도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별도의 비위 행위로 심의 대상 및 징계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다.

(3) 제3자 (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주의사항**

- 가해행위자가 학교의 징계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므로, 가해행위자의 부재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며 허위 증언 또는 피해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발설하지 않도록 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사건에 대하여 무분별한 추측성 발언을 하지 않는다.

○ **학과 차원의 피해학생 조치사항**

- 지도교수와 전공생 간의 사건은 학생의 진로와 직결된 사건이므로 학과의 매우 세밀한 지원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해당 사건이 학생의 졸업과 진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학생의 의향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가해 교수와의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가해 교수와의 공간분리나 지도교수 변경 등을 지원한다.

- 만약 해당 교수가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피해 학생뿐 아니라, 해당 교수의 다른 전공생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때 조치사항들은 학과의 일방적인 조치보다는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전공학생들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4) 학교 인권센터

○ 조치사항

- 체육계열 전공자의 개인지도나 논문심사를 앞 둔 대학원생의 경우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건들이므로 신고인이 원하거나 염려하는 바를 세밀하게 점검한다. 특히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학과와 긴밀하게 조율한다.
- 피해자가 가해 교수와의 공간분리를 원하는 경우 늦어도 조사시점에서는 교수의 수업 배제나 지도교수 변경 등을 학과,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 신고인이 피신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고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이메일, 문자,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피신고인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전달할 것을 안내한다.

○ 2차 피해 방지 및 재발방지

-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인 사건 처리 대응을 하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들의 비밀유지와 보호에 유의하도록 한다.
- 대상별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며, 인권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이해도 및 대응력을 높이도록 한다.

4) 진로상담에서의 성희롱

가) 사례

(사례1) A는 졸업이 가까워지고 취업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때가 다가오자 압박감과 불안감이 심해져 지도교수님과의 상담을 요청하였다. 스펙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던 A는 지도교수와의 상담에서 “일단 살부터 빼야하지 않겠어? 요즘은 다 서비스직이야. 스펙도 스펙이지만 사람들은 일단 겉모습을 보고 호불호가 갈린다고. 일단 여자는 예쁘고 친절하고 잘 웃어야해. 면접 때도 그런 걸 본다고.”, “남자는 특정 능력이 뛰어나면 되지만 여자는 아름다운 미모가 스펙이 될 수 있어. 더 나이 들기 전에 젊고 탱탱할 때 서둘러 취업하는 게 좋아. 어차피 결혼하고 애도 낳아야 하잖아, 지금 남친 있지?”라는 말을 들었다. 불쾌감이 심했지만, 관련 분야 전문가인 교수님의 말은 너무나 단호했고, 비슷한 이야기를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못했고, A는 더 이상 지도교수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사례2) 이공계열 전공생인 B의 지도교수는 1주일에 많으면 3~4회 제자들과 술자리를 벌였고, 단둘이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잦았다. 교수와의 술자리가 랩실 내에서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어느 날 B는 졸업을 앞두고 지도교수로부터 졸업을 시키기 어렵다는 통보를 들었다.

B는 여기저기 면접을 보는 상황이었으나, 예기치 않은 교수의 통보로 인해 취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중에 B의 지도교수는 어느 날 3차 술자리에서 B를 여자 접대부가 나오는 학교 근처의 유흥주점의 룸으로 데려갔다. 여자 종업원의 접대를 받던 교수는 "네 옆에는 남자를 앉혀야 하는 게 아니냐"며 농담을 했고 종업원을 내보낸 뒤에는 B에게 좀 더 공부를 해서 좋은 논문을 쓰라는 등 졸업을 시켜줄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였다.

B가 폐쇄적인 공간에 둘만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졸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서러움에 울기 시작하자, 지도교수는 슬금슬금 B 옆으로 오더니, B의 손을 잡고는 '울긴 왜 울어 울지마'라고 달래는 듯하다 '뽀뽀, 뽀뽀...'라며 B에게 뽀뽀를 강요하였다. 때마침 룸에 들어온 종업원 덕분에 B는 순간을 넘길 수 있었지만, 졸업 앞에 절대 약자인 본인에게 뽀뽀를 강요한 교수의 행동에는 분노를 느꼈다 (교육부, 2018).

나) 사건인지 이후 대응단계

(1) 피해자

○ 사건처리 방법 모색

- 교수의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 학교 친구, 선배 등 주변의 신뢰할만한 사람과 상의하고, 교수의 일대일 성희롱의 경우에도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뢰할 만한 사람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해결방법이 어려울 경우, 가능한 빨리 학교 인권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도록 한다. 여기서는 공식적 사건 심의 처리나 중재 등이 가능하며, 심리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증거확보

- 본인의 피해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둔다. 기술은 되도록 육하원칙이 충족되도록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본인의 목소리가 녹음된 당시 상황을 녹음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 외에도, 사진, 동영상 자료 등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해둔다.

○ 조치사항

- 피해 사실을 학내 인권센터에 알리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추행죄 등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 학내에서의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조치 요구 등 다양한 학내 조치와 관련 사항을 안내받기 위해서는 학교 인권센터에 도움을 청한다.

○ 가해행위자에 대한 대응

- 피해를 겪은 후 가해행위자와의 개인적인 접촉을 삼가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다른 사람을 대동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보도록 한다.

○ 요구사항

- 학교 인권센터, 학과 등을 통해 가해행위자와 격리된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사건조사에서부터 일련의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방지를 요구할 수 있다.

(2) 가해행위자

○ 사건예방

- 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하거나 사적 목적의 만남을 제안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교수의 윤리를 벗어나는 비교육적인 처신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
- 교수와 학생들 간에 다년간의 친분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수는 학생에게 성적 평가, 논문 심사, 진로 지도, 취업 추천 등의 권한을 갖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교수와 학생간의 만남은 이러한 권력관계에 근거한 비자발적인 만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 성범죄행위에 해당됨을 인지

- 육체적 성희롱이 행해진 경우 신체를 만지거나 만지려고 했다면 교원의 권한을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1항)이나 미수범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대학교수가 사제관계로 인하여 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수행한 사건에 대해 처벌을 명한 판례가 있다 (울산지방법원 2014.6.19. 선고 2014고단95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1.16. 선고 2013고단6624 판결). (교육부, 2018)

○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따라 학교 인권센터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성실하게 임한다. 피해자의 요구 시에 사과하도록 한다.

○ 2차 피해 예방

- 졸업학기를 맞아 취업이나 진로에 교수의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이 학생의 향후 진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고, 특히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개인정보의 누설은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 재발방지 및 유의사항

- 학생을 진심으로 위하는 발언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이나 맥락,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
-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성차별적인 말을 점검하도록 한다. 성차별적인 발언 외에도 학생들의 외모, 의상, 몸에 관한 성적인 비유는 성희롱으로 인식되기 쉬우므로 발언을 삼가도록 한다. 홀로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학교 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화법, 교수법, 농담 등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제3자 (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 목격하거나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게 된 모든 제3자는 타인에게 피해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보호해줄 수 있도록 한다.
- 학생회 차원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매뉴얼이나 대처방안에 대해 학생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배포하는 등 학내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건 제보 시 인권센터 신고의 중간 역할을 이행할 수 있다.

○ 학과 조치사항

- 대학원생이나 예체능전공 등 지도교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경우, 지도교수를 교체하거나, 외부위원과의 논문진행, 심사위원단 재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 학생의 졸업이나 진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 가해행위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분리를 보장하고, 필요시 가해행위자의 수업 중단이나 학생 지도를 제한시킬 수도 있다.
-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교수의 수강생 및 지도학생 중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 외에도 학과 내 상담 중 성희롱, 성추행 등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학과 학생 및 교수를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배포 등 학과 내 관련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필요시 인권센터에 교육 의뢰).

(4) 학교 인권센터

○ 조치사항

- 다른 사례들과 비교하여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건들이므로, 신고인이 원하는 바와 걱정하는 바를 세밀하게 점검한다. 특히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학과와 긴밀하게 조율하도록 한다.
- 신고인이 피신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고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이메일, 문자, 모바일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피신고인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전달할 것을 안내한다. 만약 스토킹 행위로 인지될 만큼 통제 불가능한 연락을 받고 있다면 일체 무 응답할 것을 안내하고, 인권센터에 신고할 것을 안내한다.

○ 미성년피해자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 신고 대상이므로 경찰에 신고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 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처분이 불가능한 사건의 경우에는 상담원이 자체적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경찰과 상담하거나 법률자문을 받아서 조치한다.

○ 2차 피해 및 재발방지 대책

-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인 사건 처리 대응을 하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들의 비밀유지와 보호에 유의하도록 한다.
- 신고자와 가해행위자의 공간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학과,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대상별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매뉴얼의 마련 및 배포, 인권센터 홈페이지, 홍보활동 등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이해도 및 대응력을 제고한다.

다. 학생 간 성희롱·성폭력사례 및 대응 방안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중 학생이 가해행위자나 피해자로 관련된 상담이나 조사 건수가 가장 많다. 교내 성희롱·성폭력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행위이다. 가장 일반적인 대응행태는 피해사실 숨기기인데, 이렇게 행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확신이 없고, 피해자가 심리·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동국대학교는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불관용 원칙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행위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공동체 회복을 위한 회복적 정의 원칙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피해 경험을 숨기고 고통 받는 피해자로 남아 있기보다는, 즉시 학교 인권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청할 것을 권한다. 아울러 신뢰할 만한 친구, 선배, 교수와 상의하여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방법도 있고, 이러한 시도가 피해자의 빠른 치유·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이번 대응방안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이후 피해자, 가해행위자, 친구, 선배와 같은 신뢰관계인, 교수, 학교 인권센터 등 각 행위주체가 초기 단계에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학생 간 성추행 등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스토킹 폭력, 외국인 학생 성희롱·성폭력, 단톡방 성희롱 사건 등으로 유형화하여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육부, 2018, 내용 일부 수정 보완).

1) 학생 간 성추행 등 성폭력

가) 사례

A와 B는 학과 선후배 사이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학과 임원인 A와 B는 함께 신입생 환영회 준비를 하였다. 밤 11시가 되어서도 업무가 끝나지 않자 둘은 B의 집에 가서 일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집에 가는 길에 B가 술을 사자고 제안했고, A는 이에 동의해 맥주와 소주를 사서 B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업무를 논의했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A는 술을 마시다 취해서 먼저 잠이 들었고, B는 잠든 A의 입술에 키스하고 몸을 더듬고 A의 옆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먼저 잠에서 깬 A가 자신의 속옷 중 일부가 벗겨진 것을 발견하였고, 거울에 비춰보니 목에 상처가 난 것을 확인했다. 깜짝 놀란 A는 자는 B를 두고 가방을 챙겨 급히 밖으로 나왔다.

귀가 후 A는 목의 상처를 사진촬영 하여 친한 친구 C에게 메시지로 전송했고, 전화로 사건 당일 일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다음날 A는 담당 지도교수 D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전날 있었던 피해사실 및 B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상담신청을 받은 D는 A와 상담한 후, A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해보여 A의 동의를 받아 대학 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연락하여 본 사건을 인계하였다 (교육부, 2018).

나) 사건인지 이후 대응단계

(1) 피해자

○ 사건처리방안 모색

- 우선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 받고, 필요하면 인권센터 도움을 받아 경찰이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한다.

○ 친구와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상의

- 자신의 문제를 함께 상의할 수 있는 가까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을 요청한다.
- 가족과 편하게 상의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비밀보장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인권센터 신고 및 보호조치 요구

-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인권센터에 상담 및 도움을 청하고, 가해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공간분리와 관련하여 학과에 요청하는 사항 등을 정리하여 인권센터에 제출한다.

○ 증거확보 노력

- 피해사실 인지 즉시 관련 증거를 수집한다. 피해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당시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내용 등을 보관한다.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목격자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피해 이후 자신의 심경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관찰하고 기록한다.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비밀보장을 당부하며 심리적 혼란과 고통, 피해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상의한다.
- 성폭행(강간) 피해가 의심되면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행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보유한 병원을 72시간 내 방문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센터에 지원요청을 하거나 혹은 직접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성폭력범죄 경찰 진술조사,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사용 및 법의학 증거수집, 심리상담, 국선변호사 지원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심리적·정서적 후유증 인지 및 치유

- 피해인지 이후 자신의 신체적·감정적 변화를 점검하고 인권센터, 학생상담센터, 신뢰하는 사람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불면, 식욕 없음, 소화불량, 가슴 통증, 이유모를 눈물, 우울, 불안, 두려움, 걱정, 자책감, 절망감 등의 신체적·감정적 변화에 주의한다.
- 사건과 그 전후 상황과 당시 자신의 감정과 생각, 몸 상태 등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심리적, 신체적 후유증에 대한 치유와 의료지원 등을 인권센터를 통해 학교에 요청한다.

(2) 가해행위자

○ 상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 접촉의 심각성 인지(성범죄 인식)

- 성폭력 가해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평소에 자신의 성적 행동이나 언사가 타인에게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피해자가 잠든 상황을 이용하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하는 것은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에 해당되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준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9조). (교육부, 2018)

○ **교내외 조사에 성실히 협조**

- 조사 및 면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대학 내 인권센터 또는 경찰에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성실하게 조사와 면담에 임해야 한다.

○ **진정한 사과와 반성 및 피해자 의사 존중**

- 가해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은 당황하며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기보호 행동보다는 진정한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처벌보다는 가해행위자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상대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하여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반성하는 자세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징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 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변인들에게 사건에 대해 해명하려고 시도하려 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신상을 누설하는 등의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피해자 의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화해를 시도하지 않는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자신의 잘못을 수용하고 당사자 간 화해하는 것이지만, 이를 도모하는 가해자의 일방적 행동은 피해자를 분노하게 할 수 있다.
- 심리·정서적 불안정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교내 인권센터나 학생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

(3) 제3자 (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피해자 지지 및 관련 정보 제공**

-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에 대한 비난, 피해자 책임론, 피해자의 자책감을 부추기는 말을 절대 삼간다.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지 말고, 특히 피해자 옷차림, 생활습관, 연애 스타일, 피해자에 대한 인상, 소문 등으로 절대 피해자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 고통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견하고,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고 신뢰한다.
- 피해자 신상을 포함하여 사건 관련 내용에 대해 비밀 보장하고, 피해자 심리치유 상담이나 인권센터 조사에 동행하거나 증거 수집을 돕는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고 지지하며 필요하면 참고인으로 증언하거나 관련 자료를 인권센터에 제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 피해자에게 비밀유지 약속을 하고, 관련 대화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건이 공론화되어도 피해자 신원을 절대로 밝히면 안 된다.
- 피해자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하고, 정서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처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건 해결 관련 대응 정보를 수집하여 알려준다.
- 가해행위자가 교내 구성원이면 우선 대학 내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인권센터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피해자 보호, 임시 조치, 피해자 치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학과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

- 학과에서도 학생의 상담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며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건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지지한다. 혹시나 '교수와 둘이 상담하는 것이 불편하면 친구와 함께 와도 괜찮다'고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약속한다.
- 피해자의 건강, 일상생활, 학업 활동과 관련 상태를 확인하고, 가해행위자와의 공간분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피해자와 상담한 후 교내 인권센터에 사건을 인계하여 사건처리 및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교내 인권센터

○ 관련 정보제공 및 피해자 요구사항 확인

- 사건접수 단계에서 사건 처리 및 구제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항과 제한점을 설명한다. 인권센터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비밀보장에 대한 기관의 방침과 기준, 사건조사심의 및 징계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 학교 관련 규정, 관련 법령에 대해 안내한다.
- 피해자와 가해행위자로부터 사건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파악한다. 가해행위자와의 합의 조정을 원하는지 혹은 징계를 원하는지에 따라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에서 성희롱, 성폭력을 인지했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건조사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 등으로 사건조사나 징계처리가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성추행 및 성폭행일 경우 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로 연계할 수 있다.

○ 상담, 조정, 사건 조사 및 사후관리

- 늦어도 조사시점에서는 신고자와 가해행위자의 공간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학과,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상담 후 사건내용을 기록·정리하여 보존하며, 기관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도

- 교수 변경, 학부변경, 휴학 인정 및 연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원하고, 피해자가 합의·중재를 원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필요하면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동국인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치결과를 징계를 포함하여 대학의 관련 부서에 권고한다.
-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협조가 필요한 대학 내 부서 책임자와 교수로부터 피해자와 가해행위자의 신분보장을 위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도록 협조한다.
- 해당사건 처리가 최종 종결되고 난 이후 모니터링, 가해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가해행위자 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피해자 심리적 치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가해행위자가 심리·정서적 불안정으로 힘들어하면, 교내 학생 상담센터 등에 의뢰한다.
-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 디지털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컴퓨터, 전화,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영상, 말,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물카 등),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하거나 전시·상영 등을 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형사상 처벌과 학교 징계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주요 범죄>

-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사례

(사례1) A는 같은 과 B와 사귀다가 헤어졌다. 그런데 B와 헤어지고 몇 개월이 지난 요즘 들어, 학과 동기 일부가 A 자신을 어색하게 대하거나 피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얼마 후 A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 포르노 사이트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친한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깜짝 놀라고 분노하여 A는 B에게 연락하여 따져 물었다. 하지만 B는 자신이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A와 헤어지고 나서 몇 개월 전 핸드폰을 바꾸느라 메시지와 영상 내용을 다 지우고 팔았는데 그때 유출된 것 같다고 했다. A는 영상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영상을 삭제해주는 업체를 찾아 연락했는데, 한 가지 영상물을 각종 사이트를 찾아서 삭제하는 데 200만원이 든다고 했다. 다급한 A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과 빌린 돈으로 영상 삭제 작업을 의뢰했다.

하지만 이미 학교에서 A 자신의 동영상을 본 지인들은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 이러한 비용을 들이고도 완벽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공포와 무기력감을 느꼈다. A 자신이 잘못하여 영상이 유출된 것도 아닌데, 졸업할 때까지의 학교생활도 막막하고 향후 사회생활에서 언급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불면증과 대인기피증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례 2) A와 B는 같은 학교 학생이다. 강의실이나 도서관에서 A는 B를 종종 마주쳤는데 B가 가끔 긴장하거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태도를 취할 때가 있어서 이상하게 여겼었다. 어느 날 A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근처에 앉아 있는 B가 휴대폰으로 자신의 다리를 찍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B가 도서관 밖에서 어떤 여학생의 다리를 찍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경찰 신고를 생각했지만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여 망설이다가 큰 결심을 하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A는 학내에서 공간분리 등의 보호 받기를 원하고 B가 학교에서 공식적인 처분을 받기를 원하여 학내 성희롱 고충 상담기관에도 신고하였다 (교육부, 2018).

나) 사건인지 이후 대응단계

(1) 피해자

○ 사건처리 방법 모색

- 위 사례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관계 동영상 등의 유포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신속하게 인권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고, 경찰에도 신고한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학교 측의 도움으로 사건처리를 원하면 교내 인권센터에 사건 신고를 한다.
- 심리적 혼란으로 결정이 어렵다면 심리 상담을 먼저 받고 안정을 회복하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할 수도 있다. 다만 증거확보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 **개인 신상 비밀 유지 등 원칙 준수**

-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나 관계인의 개인 신상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 당사자나 관계인을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당사자에게 위협이나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삼간다.

○ **친구 및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상의**

- 자신의 문제를 함께 상의할 수 있는 가까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본의 아니게 해당 내용이 타인에게 알려져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개인 신상이나 사건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비밀보장을 요청한다.
- 가족과 편하게 상의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비밀 보장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교내 인권센터에 도움 요청**

- 우선 신속하게 교내 인권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한다.
- 자신이 당면한 사건을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부분에 명확히 동의하였는지, 자신이 원한 것이었는지, 원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센터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유포자가 학내 구성원인 경우 학교 측에 가해행위자를 대상으로 징계나 접근금지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심리적 · 정서적 후유증에 대한 인식**

- 불면, 식욕 없음, 소화불량, 가슴 통증, 우울, 불안, 두려움, 공포, 걱정, 자책감 등을 경험할 수 있는데, 자신의 신체적, 감정적 변화에 주목하고 사건과 그 전후 상황과 당시 자신의 감정과 생각, 몸 상태 등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다.
- 심리적, 신체적 후유증에 대한 치유와 관련된 지원을 인권센터에 요청한다.

○ **불법영상 유포 확산 방지 노력**

- 유포된 사이트를 직접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심신 안정을 위해 대리인이나 조력자에게 유포 사이트를 찾아줄 것을 부탁한다.
- 동영상 유포자를 알면 대리인이나 조력자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유포 중단 및 철회를 요청한다. 문자, 이메일, 전화로 유포자와 소통할 때 관련 내용에 대한 기록을 자료로 보관한다.
- 유포된 사이트를 확인하면 조력자 등을 통해 유포 중단을 요구하고, 계속 유포 중인 경우 사이버경찰청이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의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 도움을 요청한다. 필요시 교내 인권센터의 지원을 받는다.

(2) 가해행위자

○ 성폭력 등 범죄행위에 대한 인지

- 누군가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한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대상임을 인지해야 한다.
- 상대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거나, 상대 동의를 얻어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판례(대전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4고단438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고단 396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고단120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고단3601 판결)가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고단1183 판결), 유포만 하는 행위(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2. 10. 선고 2014고단930 판결)의 경우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 피해자가 동의한 촬영물이기에 유포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상대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교육부, 2018)
- 불법 촬영 등으로 유포된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행위자가 부담해야 한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2018년 9월 14일 시행).
-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교내 인권센터나 학생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

○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 동의 없이 상대의 다리를 촬영하거나, 사귀는 관계에서 촬영한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반성한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표현하고, 고통에서 벗어나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피해자 요구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피해자나 관계인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으면 행위를 부인하고 방어하려는 입장을 취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건해결에 협조한다.

○ 개인 신상에 대한 비밀유지 원칙 인지

-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나 관계인의 개인신상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 신뢰하는 사람에게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고자 할 때는 비밀유지 요청을 하고 약속을 받은 후 상담을 하도록 한다.

○ 2차 가해 및 유포확산 방지 노력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SNS에 올리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공간분리 등 임시조치를 준수하고 당사자나 관계인을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 당사자에게 위협이나 폭행 등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유포하지 않는다.
-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에 자신이 연루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포 확산 방지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출 자료의 삭제는 법원 판결의 양형과정에서 “사건 범행으로 촬영된 사진이 삭제되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판례(울산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고단3601 판결)가 있으므로 유출 자료의 삭제 노력은 유리한 양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피해자에 대해 악의적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제311조), 명예훼손(제317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삼가 해야 한다. (교육부, 2018)

○ 교내외 사건조사에 협조

- 경찰 신고가 되었다면 경찰의 설명을 듣고 절차에 협조한다. 피해자나 관계인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았을 경우라면 사과하고 교내 인권센터에 사건해결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실행한다.
- 증거인멸을 위해 자신의 정보통신기기에 저장된 증거를 지우려 하지 않는다.

(3) 제3자 (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피해자 지지 및 지원 제공

- 불법 촬영물이나 이의 유포와 관련하여 고통 받는 피해 학생의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불법 촬영물 유출자가 같은 조직 구성원이면 유포 확산 중단을 단호히 요구한다.
- 피해자 대리인의 역할을 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바를 인권센터에 전달한다.
- 피해자에게 건강, 일상생활, 학업 등에 대해 불편함이 없는지 묻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도울 수 있는 것을 돕는다. 도울 수 없는 것은 교내 인권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보고 결정할 것을 피해자에게 권한다.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기다려준다.

○ 2차 피해 방지 및 재발방지 노력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당사자 개인신상정보와 사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피해자나 행위자 어느 한쪽 편에 서서 다른 편을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사건의 해결과 재발방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협력한다.

○ 피해자 보호조치

- 사건 처리 과정에 피해자(신고인)와 가해행위자(피신고인)가 같은 수업에 등록된 경우가 확인되면, 피해자의 어려움과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가해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킨다. 피해자의 공결처리나 가해자 출석중단 등에 대해서 피해자(혹은 대리인)와 논의하여 지원한다.
- 2차 피해가 있는지 혹은 확산되는지 등에 대해 피해자(혹은 대리인)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대응하고, 피해자가 등록한 학과목 담당교수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원보장과 비밀유지를 요청하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 학과 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확인되면 학과 차원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후유증, 대처 방안 등에 대해 교육이 이뤄지도록 한다. 재발방지 인권교육의 경우 필요시 인권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4) 교내 인권센터

○ 정보와 서비스 제공 및 피해자 요구 파악

- 피해자에게 사건해결절차를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해결에서 원하는 것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사생활 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의 권리에 대해 안내한다. 피해자가 원하면 사건 처리 시 가명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다.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대리삭제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당사자 신분증빙, 사건처리 지원 동의서(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 증빙)와 같은 사건처리 서류를 안내하고, 피해자에게 증거 확보를 위한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알려준다.
- 사건이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는데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찰 신고에 대해서도 설명해준다.
- 양 당사자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당사자 개인 신상정보와 사건내용에 대해 비밀유지를 요청한다.

○ 피해자 보호조치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 삭제 차단 의무를 근거로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2), 미 조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2)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고자와 가해행위자의 공간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학과,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예방교육 및 활동 지원

- 인터넷상의 불법촬영물의 '영구삭제'는 불가능하다. 사진 및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데, 이렇게 확산된 내용을 인위적으로 삭제하기란 불가능하다. 최초 유포자가 자신이 올린 영상을 삭제해도 이를 받아 보관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포된 사진 및 동영상 삭제에 과도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 디지털성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영구삭제보다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가 소속된 학과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 피해자가 자책감에 시달릴 수 있는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피해자 지지모임이나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학내 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모색한다.
- 필요시 의료, 상담, 법률서비스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기관과 연계하고 피해자 지원을 한다.

○ 심리치유 등 피해자에게 서비스 지원

- 피해자의 자책감을 없애고 불법 촬영물이 만들어지고 유포되는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행위자에게도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학생상담센터 등에 연결해준다.

○ 가해행위자에 대한 조치

- 가해자에게 피해자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를 알리고 이행하도록 하고, 가해행위자도 후유증을 겪을 수 있으므로 상담제공과 그에 합당한 반성과 책임을 지도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지게 한다.
- 가해행위자가 핸드폰 분실, 판매, 해킹 등의 변명으로 자신이 유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면담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핸드폰 도난 시 GPS가 켜져 있으면 경찰 신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핸드폰 제조사 등의 계정에 연결하여 내부 데이터를 모두 삭제할 수 있다. 혐의를 부인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등의 안내를 하여 자신이 저지른 문제에 대해 깊이 성찰하도록 한다.

○ 외부기관 연계

- 피해자 지원 및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를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및 경찰과 적극 연계한다. 경찰에게 가해행위자의 디지털장비, 핸드폰, 안드로이드 등 압수 수색과 증거수집, 영상삭제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요청한다.

- 인권센터에서는 성폭력 범죄 및 인권침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경찰청, 해바라기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3) 데이트 성폭력

가) 사례

(사례1) A와 B는 같은 과 커플이다. 연애 경험이 없는 신입생 A는 선배 B를 좋아하지만 스킨십이 부담스럽다. B가 A에게 키스를 하려 할 때 거부하고 자신은 손을 잡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키스는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어느 날 휴일에 B가 자신의 자취방에서 영화도 보고 음식도 해먹고 놀자고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 갔다. B의 자취방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B가 갑자기 A에게 키스를 하려 했다. A는 놀라서 몸을 뺐고 B를 밀어냈다. B는 화를 내면서 “네가 연애를 안해봐서 그러는데 연애하면 이런 거 해야 하는 거야. 너, 나 사랑하지? 사랑하면 키스나 성관계도 해야 하는 거야.”라며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A는 멍해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고 B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집에 돌아온 A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여자 친구임에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자책감도 들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 B에게 화도 났다. 고민하다 친한 학과 여자선배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사례2) A는 B와 연애를 한지 1년 가까이 되었다. 최근 B의 자취방에서 같이 공부하고 놀던 차에 B의 컴퓨터에서 A가 계정 로그인을 했고 로그아웃이 안 된 상태에서 B가 A의 계정을 보게 되었다. 그 후 B는 A의 이동 경로를 이 계정을 통해서 파악하게 되었다. 특히 B는 A에게 ‘너는 믿어도 세상은 못 믿으니 집에 일찍 들어가’라며 귀가시간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B는 A가 언제 어디에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계속 알기 원했다. A는 B가 자신의 귀가 시간과 동선을 통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B의 통제로 다툼이 생겨 둘은 헤어진다. 그러나 B는 A와 같은 전공이어서 조별 소모임 활동을 함께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B는 A가 화장실을 가거나 집에 가려 할 때 뒤에서 쫓아오곤 했다. 그리고 화장실 앞에서 A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뒤에서 쫓아오거나 쳐다보곤 했다. B는 A에게 문자를 해서, A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거나 무엇을 하는지 계속 보고하라고까지 했다.

이처럼 B의 감시와 통제 행동은 이별 이후에도 계속되어 새벽에도 문자와 카톡으로 연락을 해오고, 화내는 일도 심해졌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A는 죽고 싶은 맘이 들었고, 식욕도 없어졌고, 친구들과 학교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친한 선배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선배의 권유로 함께 학교에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A는 선배와의 상담을 통해 통제당하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하는 것이 폭력이고 스토킹임을 알게 되었다(출처: 교육부, 2018).

나) 사건인지 이후 대응단계

(1) 피해자

○ 사건처리방안 모색

- 자신을 위해서 어떤 사건 해결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정하되, 정보가 부족하여 결정하기 어렵다면 신속하게 교내 인권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처리 방안을 도움 받는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다.
- 데이트 성폭력 가해자가 학내 구성원이므로 학교 인권센터에 징계나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공식적 사건 심의 처리가 아닌 가해 행위 중단과 이후 2차 피해 중단만을 원한다면 인권센터에 중재를 요청한다. 가해행위가 지속되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공식조사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 해바라기센터 등 병원에 방문하여 증거채취

- 직접 혹은 인권센터에 요청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 성폭행 피해가 의심되면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행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보유한 병원을 72시간 내 방문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증거 확보를 위해 피해 직후 샤워를 하지 않는다.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성폭력범죄 경찰 진술조사,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사용 및 법의학 증거수집, 심리상담, 국선변호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통제 및 스토킹이 폭력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인지시키기

- 상대방의 감시와 통제는 폭력행위라는 점을 자각하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몰래 쫓아오고, 훑쳐보고, 집요하게 쫓아오는 행동이 스토킹 범죄라고 말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타인의 사생활을 감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가해행위자에게 전달한다.

○ 가해행위자에 대한 대처

- 타인의 핸드폰이나 컴퓨터 계정에 몰래 들어가 타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상대에게 전달한다. 이때 신뢰관계에 있는 친구나 선배 등 대리인을 통해서 상대방과 연락을 취할 수도 있다.
- 가해행위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린다. 또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당사자 개인 신상정보와 사건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를 요청한다. 이렇게 알렸음을 이메일, 문자, 카톡, 통화 기록 등의 증거로 보관한다.
- 타인의 컴퓨터 계정과 개인정보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몰래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것을 가해행위자에게 알리고,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가해행위자가 피해자 사생활을 비난하며 유포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 친구 및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상의

- 자신의 문제를 함께 상의할 수 있는 가까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때 지인에게 철저한 비밀보장을 요청하고, 가족과 편하게 상의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비밀보장 요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교수 및 학교 측에 도움 요청

- 교내 인권센터나 신뢰하는 교수를 통해 같이 참여하는 수업이나 소모임 활동 등에 대해서 상대방이 가해행동을 했기에 분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사건해결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모르거나 결정하기 힘들면 교내 인권센터에서 상담을 요청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 피해자와 가해행위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수업이나 소모임 활동, 지인들에게 가해행위자가 '피해자 책임'을 운운하지 않도록 교수와 친한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건 처리 중이라는 것을 알린다.

○ 심리적·정서적 후유증 인지 및 치유

- 자신의 신체적·감정적 변화에 주목하고 교내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 불면, 식욕 없음, 소화불량, 가슴 통증, 이유모를 눈물, 우울, 불안, 두려움, 걱정, 자책감, 절망감 등의 신체적·감정적 변화에 주의하여 심리적, 신체적 후유증에 대한 치유와 의료지원 등을 요청한다.
- 사건과 그 전후 상황과 당시 자신의 감정과 생각, 몸 상태 등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다.

○ 사건내용에 대한 정리 및 증거수집

- 사건에 대해 육하원칙으로 구체적인 진술 및 정리를 하여 어떤 부분에서는 명확한 동의를 있었는지, 원한 것이었는지, 원하지 않은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정리한다.

(2) 가해행위자 (피신고인)

○ 피해자 의사 존중

- 피해자가 당분간 연락과 접촉 금지를 요청했을 때 이를 존중하고 지키며, 당사자 개인 신상정보와 사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 데이트폭력의 개념이나 유형,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여 자신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하는 태도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징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교내 인권센터에 상담 요청 및 협조**

- 신뢰관계인에게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고자 할 때는 비밀유지 약속을 받은 후 상담한다.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면,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고, 조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협조한다.

○ **2차 가해 행위 금지**

- 주변인들에게 피해자가 동의해서 이러한 '폭력' 상황이 지속되었다는 식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지 않는다.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2차 가해는 징계수위를 결정하는데 가해행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가중징계 가능
- 자신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것과 소문 유포 행위를 즉각 중단, 철회한다. 사이트나 단독방 등에도 올린 내용이 있다면 즉각 삭제하고 철회 의사를 표명한다.

○ **성폭력 행사에 대한 범죄인식 필요**

- 데이트 성폭력은 연인관계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을 말하는데 친밀한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이 행해진다면 그것은 성폭력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기 때문이다. 데이트폭력도 연인간의 폭력을 의미하는데 이것 역시 폭력범죄를 행사한 것이다.
- 甲남과 乙녀는 서로 연인 사이인데 데이트 도중 甲남이 성관계를 요구하자 乙녀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으나 甲남은 강제로 성관계를 했고, 乙녀는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는 않았던 사건에서 강간죄를 인정하여 甲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6.11. 2006노711 판결).
- 연인사이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판례가 있다(울산지방법원 2012.2.7 선고 2011고합269 판결 강간치상). (교육부, 2018)

(3) 제3자 (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

- 사건 당사자 개인신상정보와 사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가해행위자가 소문을 유포하지 않도록 조언하며, 사건 당사자 양측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않는다.

○ 피해자 지지 및 관련 정보 제공

- 피해자의 고충을 들어주고,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피해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고, 대리인이나 지지모임 등을 만들어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조력하는 방법도 모색한다.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어려움과 요구에 대해 가해자, 학과 교수, 인권센터에 전달하고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 사건해결과 관련하여 학내 인권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할 것을 피해자에게 조언하고, 사건과 해결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하고 싶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사건에 대해 말해도 괜찮은지 먼저 묻는다.

○ 학과 차원의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 학과에서는 교내 인권센터와 의논하며 사건 해결에 노력하고, 피해자와 가해행위자가 같은 수업이나 소모임, 공간에 있게 되는 경우 피해자의 어려움과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가해행위자를 분리시킨다. 대체 수업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공결처리가 필요한지, 가해자를 출석 중단시킬지 등에 대해서 피해자나 대리인과 논의하여 지원한다.
- 피해자가 원하는 바와 학업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면담을 진행한다. 피해자가 직접 면담을 기피하면 대리인을 통해서 피해자 요구와 조력 방안을 논의 한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수업 원거리 자리 배치,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모임 변경, 공결처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피해자가 등록한 수업 담당 교수들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차원의 협조 요청을 하고, 피해자 신변보장과 비밀유지가 되도록 하며, 해당 수업에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학교 인권센터

○ 사건처리 절차 안내 및 피해자 요구 파악

- 사생활 보호나 2차 피해 방지조치 요구 등 피해자 권리를 안내한다. 사건처리 시 피해자가 원한다면 가명으로 기록을 남기고 처리할 수 있음을 알린다.
- 상담 및 사건처리 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사건처리 지원 동의서 등 관련 서류에 대해서 안내한다.
- 경찰 조사와 교내 징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인권센터에 사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한다.

○ 추가피해 방지 및 예방교육 등 실시

- 피해자가 주위로부터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면 2차 가해자를 파악하여 즉시 중단토록 조치하고, 학과 학생 대상으로 데이트 성폭력의 특성, 피해, 후유증,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한다.

- 2차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 피해자나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늦어도 조사시점에서는 신고자와 가해행위자의 공간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학과,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피해자 심리 치유 및 관련 서비스 안내

- 피해자가 교내외 상담기관의 도움으로 피해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여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의료,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교나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최대한 지원한다.

4) 스토킹 폭력

가) 사례

A와 B는 같은 과 선후배 사이로 같은 수업을 수강하였다. 조별 과제에 같은 조로 구성되어 과제를 위한 모임을 몇 번 가진 후 B는 A에게 호감을 표현하였다. 적극적인 표현이 남자답게 느껴졌던 A는 데이트 요청을 수락하게 되었다. B는 첫 데이트 이후 끊임없이 카톡을 보내고 대답이 늦을 시 여기저기 연락하여 A의 소재를 물어보았다. A는 B의 관심이 부담스럽고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하였다.

데이트 요구를 거절하고 싶었으나 남은 조별 활동과 수업이 있어 두 차례 더 만났다. 종강 후에도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거절의사를 밝히자, 집 앞에 찾아와서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다. 또한 전화를 받을 때까지 계속하고 문자, 카톡, 이메일을 보냈다. A의 집 앞에 찾아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집에 있는 거 아는데 왜 전화 안 받아?” 등의 내용을 담은 카톡을 보냈다. B는 A가 대답하지 않아도 혼자 화를 낸 후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등 순간순간 돌변하는 내용의 연락을 취했다. 몇 달이 지나도 계속되는 B의 행동에 A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꼈다(교육부, 2018).

나) 사건인지 이후 대응단계

(1) 피해자

○ 교내 인권센터 신고 등 학교 측에 도움 요청

-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등은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므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스토킹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급적 빨리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
- 인권센터는 신고를 받는 즉시 가해행위를 중지시키고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민·형사상의 법률적 대응 조치 뿐 아니라 가해자와 학내 분리조치를 통해 보호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인권센터에 중재 혹은 징계 요청으로 신고하면, 인권센터는 가해행위자에게 학내 조사절차 종결 때까지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한 접촉 및 접근 금지를 통보하고, 이를 어길시 경찰 신고나 가중 징계 조치를 강구한다.

○ 친구 및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상의

- 자신의 문제를 가족 및 친한 친구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되, 본의 아니게 해당 내용이 타인에게 알려지면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들에게 비밀 보장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 가해자 행동을 피해자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해자가 가해 행동을 중단하거나 조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취를 하는 경우 해당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혼자 지내지 말고, 주변 지인의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해행위자가 예측 가능한 생활 패턴이나 이동경로에 변화를 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

○ 명확하게 거절의사 표시

- 먼저 가해행위자에게 짧고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한다.
- 거부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자고 설득하거나 화를 내어도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
- 가해행위자의 언동이 폭력적이어서 직접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두려우면 문자나 메일을 보내거나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의사 전달을 요청하고, 이후 가해행위자가 연락하여 피해자 안부를 묻거나 자신의 말을 전달해 달라고 해도 응하지 않도록 지인에게 당부한다. **필요시 인권센터 도움을 받는다.**
-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고려해 본다.

○ 관련 증거 확보 및 정리

- 가해행위자가 연락 및 접촉시도를 했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해당 사실로 인해 받은 피해와 감정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가해행위자로부터 받았던 문자나 편지, 통화내용도 증거로 확보한다.
- 스토킹한 증거를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어길 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

○ 경찰 신고

- 가해행위자의 행동이 과해진다면 직접 혹은 인권센터에 요청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 보호를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 현행 형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스토킹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와 같은 협박은 협박죄(「형법」제283조), 폭행을 했다면 폭행죄(「형법」제260조),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거나 들어오려고 시도한 경우 주거침입죄(「형법」제319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교육부, 2018)
-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관에게 가해자 대상으로 구두 경고를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여 경찰로부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경고를 받는 것으로 가해자가 행동을 중단할 수 있다.

(2) 가해행위자

○ 과도한 집착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지

- 악의 없는 언동이라도 상대방이 느끼는 굴욕감, 수치심, 불쾌감, 두려움 등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성희롱 또는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성희롱은 징계와 인권교육 권고 등의 처분이 따를 수 있다. 협박 및 폭력을 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따른다.
- 경찰이나 인권센터에서 조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고,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자신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 상담기관이나 전문치료기관 등에 도움을 청한다.
- 애인관계인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고 부엌칼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배를 갈라 자해하는 시늉을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한 사건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있다 (대전고등법원 2006.7.28. 선고 2006노17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을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야간주거침입절도·상해·감금).
- 또한 십 수년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 한 피고인이 퇴거불응이나 불법정보 유통을 한 사건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2.6.12. 선고 2012고단471 판결 퇴거불응,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교육부, 2018)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

- 자신의 언동이 피해자에게 불편함이나 두려움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의사를 보인다면 즉시 언동을 삼가야한다.
- 즉각적인 인정과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피해자가 사과를 원치 않을시 피해자나 주변인을 통하여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도록 한다.

(3) 제3자 (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피해자 지지 및 관련 정보제공

-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상의하면,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원하는 바가 불분명하면 교내 인권센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조언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피해에 대해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가해행위자와의 소통 및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돕기

- 피해자가 요청하면 교내외 조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도울 수 있다.
- 피해자나 가해행위자에 대해 자의적 해석이나 평가를 내리지 않도록 한다. 사건을 피해자 뜻을 고려하지 않고 해결하려 하거나 가해행위자와 직접 대화 및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한다. 피해자를 대신하여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는 피해자 의사가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이야기가 전달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건 처리과정 동안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필요시 이동 및 귀가에 동행해주는 것을 고려한다.
- 학과에서는 수업 중 조별 수업에서 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변경이 여의치 않을 시 수업 전이나 후에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면담요청을 하여 사건 당사자들이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한다. 동시에 접촉금지 및 사건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안내한다.

(4) 교내 인권센터

○ 절차에 대한 설명 제공 및 피해자 요구사항 파악

- 신고를 받는 즉시 개입을 하여 가해자로부터 **피해자 보호방안을 강구한다.**
-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피해자에게 사건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도록 안내하고, 향후 가해행위자가 접촉을 시도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 받을 것을 알려주고, 인권센터에 대리인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
- 피해자가 상호합의를 기반으로 한 중재를 원하는지, 가해자에 대해 징계 요청을 원하는지 파악한다.

○ 상담 및 사건처리

- 피해자와 가해행위자의 공간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학과,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피해자의 심리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신고인 요청에 따라 피신고인과의 조정을 통한 합의를 중재할 수 있다. 중재절차를 따르면 징계절차는 진행하지 않지만, 중재절차의 합의 및 중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가중징계 가능

-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가급적 신속하게 피신고인의 행위를 조사하고 행위에 따른 교내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공식 조사절차를 선택한 경우 ①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② 조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국인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징계를 요구하거나 권고조치를 한다.

○ **가해행위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요구**

- 가해행위자에게 피해자와의 접촉 및 연락 금지를 요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가중징계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접촉 및 연락 금지는 통신, 물리적 접근 모두를 포함한다.

○ **사건조사 진행 및 피해자 지원**

- 조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동국인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여부를 논의하도록 한다. 피해자의 심리가 안정될 때까지 추가 상담을 제공하고, 스토킹 사건은 여타 성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신고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경찰 수사내용과 관계없이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조치할 수 있다.

5) 외국인 학생 성희롱·성폭력

가) 사례

B는 캠퍼스를 걷어가는 외국인 유학생 A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싶어 전화번호를 물었고, A와 B는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이틀 후, B는 A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제안했고 당일 오후 B, B의 친구, A, A의 친구(D) 넷이서 같이 저녁을 먹고 노래방을 갔다. 노래방에서 놀다가 B는 A에게 둘이서만 나가서 술 한 잔을 더하자고 제안했고, A와 B는 각자의 친구들과 헤어지고 둘이서 노래방 인근에서 술을 마셨다. 시간이 자정을 넘어서자 기숙사 생활을 하는 A는 자정을 넘어 기숙사에 들어가면 패널티를 받는다고 B에게 말했고, B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고 쉬다가 A를 이른 아침에 기숙사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 둘은 술을 좀 더 사서 B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다 서로의 동의하에 키스와 스킨십을 했다. B는 A와 성관계를 하고자 시도하였으나 A는 거절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B는 A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 술에 많이 취한 둘은 잠이 들었고, 그 날 아침 B는 자신의 오토바이로 A를 기숙사에 데려다 주었다.

다음 날 아침 A는 겁이 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자신보다 한국인인 가해자 말을 믿을 것 같아 가해자에게 전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주말에 할 일 등 일상 얘기를 했다. 오후에 A는 친구 D와 함께 병원에서 상처부위를 사진촬영 했고, 약을 처방받았다. D는 피해사실을 학교 내 외국인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원하는 대외교류과에 연락하자고 A에게 제안했고, A는 고민 끝에 대외교류과를 찾아가서 직원 C에게 병원기록을 제출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했다. C는 A에게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라는 제안을 했으나, 3개월 뒤 귀국 예정이었던 A는 고민이 되었다. A는 한국에서 4년 6개월 이상 거주한 한국유학생으로 3개월 뒤 졸업을 앞둔 외국인이기에 제대로 된 학내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C에게 자신이 지출한 병원비만 받아 달라고 부탁했다 (교육부, 2018).

나) 사건인지 이후 대응단계

(1) 피해자

○ 사건처리 방법 모색

- 자신이 겪는 상황에 대해서 주변의 신뢰할만한 사람과 상의하여, 자신을 위해서 어떤 사건 해결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정하되, 정보가 부족하거나 심리적 혼란으로 결정이 어려우면 인권센터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다.
- **강제 성추행은 범죄행위이므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급적 빨리 인권센터에 상담 신청을 하여 처리방안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다.** 인권센터는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가해행위자에 대하여 인권센터에 학내 징계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공식적 사건 심의 처리가 아닌 가해 행위 중단과 이후 2차 피해 중단만을 원한다면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가해행위가 지속되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공식조사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할 수 있고, 인권센터에서의 상담은 필요시 마다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 주변이나 교내 기관에 적극적으로 도움 요청

- 교내 인권센터에 상담을 받고, 외국인 학생을 지원하는 국제학생센터에 통역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다.
- 성폭행 피해가 의심되면 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해바라기 센터 등 성폭행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보유한 병원을 72시간 내 방문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 성폭력범죄 경찰 진술조사,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사용 및 법의학 증거수집, 심리상담, 국선변호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권센터에 병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 가해행위자의 연락이나 접촉 시도를 거절하고, 교내 인권센터에 가해자와의 공간 분리 조치를 요청하고, 어떤 사건해결 방법이 좋을지 결정하고 사건해결에 필요한 사항과 가해자 측에 대한 요구 사항을 인권센터에 전달한다.
- 2년 혹은 4년 단위 외국인 교환학생은 피해를 당해도 귀국하면 사건을 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들은 대학 측이 한국학생 편에 설 것이라는 생각에 신고를 꺼리는데, 대학 인권센터에서는 가해행위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에 귀 기울이고 피해자 지원에 힘쓰고 있다. 피해자는 사고 후 즉시 인권센터에 도움을 청한다.

○ **가해행위자 차단 및 심리적 후유증 치유**

- 가해자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를 모두 증거로 보관하며, 사건 후 자신의 몸 상태, 감정·정서상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심리적·정서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인권센터나 학생상담센터를 방문한다.

(2) 가해행위자

○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이 범죄행위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제 299조에 따라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자이다. 술, 약물에 취하거나 수면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형법」제297조 강간, 제297조의 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의식이 흐린 상황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준강제추행에 대해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2018).

○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 동의하지 않은 성적접촉과 성관계는 상대방에게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는 형사범죄임을 인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갖는다. 진심어린 사과를 피해자가 수용하면 학교 내 징계위원회에서 이러한 점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피해자나 관계인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사과한다.

○ 피해자 의사 존중, 2차 가해 금지, 조사에 협조

- 피해자가 연락 중단을 요청하면 전적으로 수용하고, 학교 측이 공간 분리 조치를 하면 이를 준수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문제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는 절대 삼가야 한다.
- 자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변인에게 사건에 대해 해명하려고 시도하거나 피해자 신상을 누설하는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조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다.
- 주위의 비난과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리·정서적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인권센터나 학생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

(3) 제3자(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피해자 의사 존중,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가 피해와 관련하여 상의하면 공감하고 지지해주고, 사건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한다. 피해자가 가해행위자와의 공간분리를 원하는지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한다.
-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를 교내 인권센터로 안내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체계적으로 받도록 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당사자 개인신상정보와 사건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 학과에 피해자가 상담을 요청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경청하고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며 학과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한다. 교수 개인이나 학과 차원에서 처리하기 힘든 부분은 인권센터에 의뢰하여 피해자를 돕는다.
-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과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사건 종료 후에도 피해자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담을 지원한다.

(4) 국제학생센터

○ 피해자에게 정보와 지지 제공

- 피해자에게 사건해결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주체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내 인권센터에서 상담 및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안내하고, 통역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여 피해자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어 피해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내부 대책 논의 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자들에게 당사자 개인 신상정보와 사건 내용에 대해 비밀 유지할 것에 대한 서약을 받는다.

-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사건 해결 방법을 같이 모색한다.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교내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 **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내 지원체계 홍보 (인권센터와 협조)**

- 유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외국어 홈페이지, 학교 영어신문 등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처리 절차 및 지원체계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를 통해 신고를 망설이는 외국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교내 지원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교내 인권센터

○ **사건처리 절차 안내 및 피해자 요구사항 파악**

- 피해자로부터 사건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파악한 후 제공 가능한 서비스 종류와 범위, 비밀보장에 대한 센터 방침과 기준, 중재제도 및 절차, 사건 조사 심의 및 징계절차에 대한 안내, 학교 규정, 관련 법령 및 관련 기관에 대해 안내한다.
- 협조가 필요한 부서와 직원들에게 피해자와 가해행위자의 신원 보장을 위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 시행 및 사건조사 진행**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신고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지원하고, 절차에 따라 진상을 조사한 후 동국인권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
- 사건처리가 최종 종결된 후 모니터링, 가해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인권 교육 프로그램 진행, 피해자 심리적 치유를 위한 상담 등을 진행한다.
- 피해자가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대학 측에 통역지원을 요청하고 병원 동반이나 사건처리 과정에 함께 동석하도록 하며, 피해자의 귀국 후에도, 메일을 통해 주기적으로 사후상담을 진행한다.
- 신고자와 가해행위자의 공간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학과,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예방교육 실시 및 외국인 학생을 위한 서비스 홍보**

- 인권센터는 사건당사자(피해자/가해자)가 속한 학과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사건의 재발방지, 공동체 회복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한다.
- 학생들로 하여금 외국인 여학생에 대해 잘못된 성적 고정관념이 있는지 성찰하도록 하고 이를 교정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성희롱 예방교육 및 교육 콘텐츠 제작 시, 최대한 다양한 언어버전으로 만들어 유학생들의 교육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 인권센터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외국인 학생 피해자를 위한 통역지원, 상담지원, 의료 지원, 법률지원을 안내하고 지원 시스템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6) 카카오톡 단체방 (단체방) 에서의 언어적 성희롱

가) 사례

(사례1) 대학생 A는 우연한 기회에 같은 학과 남학생들의 카카오톡 단체방(단체방)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다. A는 이 단체방 대화 내용에 자신을 포함한 같은 학과 여학생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성적 묘사, 성관계 묘사, 성적 비하 발언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며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평소 학과에서 예의 바른 태도로 원만한 교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았던 남학생들도 참여하고 있어 더욱 놀랐다. 단체방에 실명 거론이 된 피해 여학생 몇 명에게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의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배에게도 의논하였다.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상담을 신청하였다.

(사례2) 대학교 같은 학과 남학생 5명(V, W, X, Y, Z)은 팀 과제 작업 공유를 위해 단체카톡방을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같은 과 신입 여학생 4명(A, B, C, D)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외모평가, 다리등급 매기기, 가슴크기, 텐프로 발언, AV 배우 발언, 여학생 몰래 찍은 사진 주고받기 행위를 한 달 간 하였다. C의 남자친구 H는 우연한 기회에 X와 술자리에서 나란히 앉아 단체 카톡방을 검색하게 되었는데, 이 때 H는 X가 촬영한 여자친구 C의 다리 사진을 보고, 핸드폰을 뺏어 카톡방 내용을 상세히 보게 되었다. H는 여자친구 C에 대한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보고 격분하여 경찰서에 X를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증거로 핸드폰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핸드폰을 돌려 달라는 X의 강력한 항의에 H는 카톡 내용을 캡처하여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한 후 핸드폰을 X에게 돌려주었다. 여기서 X는 H가 핸드폰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모든 사진을 캡처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H는 관련 내용을 캡처하였다.

다음 날, H는 여자친구 C에게 전 날 있었던 일에 대해 전달하며 카톡 내용을 보여 주었고, 뒤이어 C는 A, B, D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카톡 내용과 관련하여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A는 경찰신고와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에 동시에 신고 하자고 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원했다. 반면 B는 법적 처벌보다 자신 등이 더 이상 피해 받지 않고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C는 경찰 신고 전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지켜보고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경찰 신고를 하자고 하였다. 가해자들이 학칙에 따라 처벌받고, 이들과 피해자가 졸업할 때까지 확실하게 동선을 분리하는 조치가 취해졌으면 했다. D는 A, B, C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 하고, 가해행위자의 사과문 작성 및 게시가 필요하고, 학과에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학내 성희롱 고충상담기관이 조사해주시기를 바랐다 (출처: 교육부, 2018).

나) 사건인지 이후 대응단계

(1) 피해자

○ 사건처리방안 모색

- 초기 단계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 학내에 사건처리를 요청할 것인지 생각한다. 자신을 위해서 어떤 해결 방법이 최선인지를 선택하는데, 정보 부족으로 이것이 어려우면 신속하게 교내 인권센터의 상담을 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다.
- 가해행위자 휴대폰에 저장된 관련 영상 등 메시지를 적법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여 행위자로부터 확보하도록 하거나 교내 인권센터와 의논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찾는다.

○ 신원에 대한 비밀유지 준수

- 피해자들과 신뢰관계에 있고 현명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사건에 대해 상의하더라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 당사자 개인의 신상정보와 사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를 부탁하고, 사건 내용이나 가해행위자 및 관계인 개인신상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 가해행위자에 대한 대응

- 가해행위자에게 단톡방 카톡 내용으로 피해자가 힘들어 하니 당분간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을 원치 않음을 알린다. 이때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당사자 개인 신상정보와 사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를 요청한다. 가해행위자에게 공지한 이메일, 문자, 카톡, 전화통화 등의 내용을 증거 자료로 보관한다.
- 가해행위자나 관계인과 불필요하게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이들에게 위협이나 폭행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심리적·정서적 후유증 인지 및 치유

- 피해자는 불면, 식욕 부진, 소화불량, 가슴 통증, 이유 모를 눈물, 우울, 불안, 두려움, 걱정, 자책감, 절망감을 경험할 수 있다. 사건인지 전후 상황 및 자신의 신체적, 감정적 상태 및 변화에 주목하며 교내 인권센터, 신뢰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 심리적, 정서적 후유증에 대한 상담 혹은 치료가 필요할시 인권센터에 의뢰하여 연계된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는다.

○ 친구 및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상의

- 자신의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가족, 가까운 지인과 상의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지인들이나 가족구성원들에게도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을 요청한다.

○ 학교 인권센터에 도움 요청

- 교내 인권센터의 상담을 받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학교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가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요청한다.
-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① 피해자 측에 대한 가해자 측은 학교 게시판이나 학교신문에 공개사과 ② 학교 측은 가해자들이 해당 학기에 피해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최대한 공간분리 조치 ③ 가해자 대상 재발방지교육을 실시 ④ 카톡방의 피해자 성희롱 사진을 모두 삭제조치 ⑤ 가해자를 불러 피해자 성희롱 사진이 다른 경로로 유출된 적이 있는지 조사 등

○ 관련 증거 수집

- 가해행위자의 핸드폰에서 성희롱 관련 내용을 보았으면 인권센터에 신고하여 적절한 절차를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받는다.
- 가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모두 증거로 보관한다. 경찰신고 없이 학내에서 사건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단톡방 대화 내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다. 증거 확보를 위해 인권센터 담당자와 의논하여 적절한 증거 확보 방법을 강구한다.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행위자 동의 없이 그 사람의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열람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 통신보호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성·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성·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2) 가해행위자

○ 사건조사에 협조

-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진행하면 사건 해결에 협조하며, 피해자가 연락 금지와 공간분리를 요청하면 이를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노력을 한다. 공간분리 등의 임시조치를 준수하고 피해 당사자나 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위협이나 폭행과 같은 행위를 하면 가중징계 대상이 된다.

○ 범죄행위 인지

- 여학생 외모, 신체에 대한 성적 묘사, 성관계 묘사행위(사례1)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된 것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13조).

- 또한 여학생 몰래 찍은 사진을 단톡방을 통해 제공한 행위(사례2)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14조 제1항).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판례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5. 선고 2013고단1183 판결) (교육부, 2018).

○ 개인 신상 비밀유지 준수 및 2차 가해 금지

- 당사자 및 관계인의 개인신상정보와 사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피해자 험담을 SNS에 올리는 등의 2차 가해 행위를 삼간다. 피해자는 처음의 성희롱보다 이후 2차 가해로 더 큰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유로 2차 가해는 가중징계 대상이므로 행위자는 조심해서 행동해야 한다.
- 단체 카톡방 구성원 외의 다른 사람들과 표현과 영상을 공유했다면 수신자에게 연락하여 자료를 폐기하고 유출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 심리적 불안 및 방어심리로 자신의 행위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 하는 태도를 절대 삼간다.
- 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변인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건에 대해 해명하려고 시도하거나 피해자 신상을 누설하는 등의 2차 가해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 2차 가해가 고려된 가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 성희롱적 언행과 표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피해자가 수용하면 사건이 조기에 종결 될 수 있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이 점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단체 카톡방에서 사적 내용의 글이나 표현 공유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자신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나 관계인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사과한다.

○ 도움 요청

- 잘못을 저질렀지만 가해행위자는 주위의 비난과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리·정서적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내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3자 (친구, 선후배, 목격자, 지도교수, 학과, 학생회 등)

○ 피해자에게 정보 및 정서적 지지 제공

- 피해자에게 건강, 일상생활, 학업에 대해 불편함이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본인의 힘으로 돕기 어려운 경우 신속히 교내 인권센터에 안내한다.

○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

- 피해자나 가해행위자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상대를 비난·험담하지 않는다. 행위자를 두둔하거나,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는 2차 가해를 하지 않는다.
- 단톡방 성희롱을 인지하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당사자 개인신상정보와 사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사건 해결과 재발방지, 대학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협력한다.
- 학과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과 소속인 것을 감안하여 같은 공간에서의 수강이나 대면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교내 인권센터와 상의하고, 사건해결을 위해 인권센터와 긴밀히 협력한다.
-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학과 학생 혹은 관계자로부터 사건에 대한 문의가 접수되면 피해자 잘못이 아님을 인지시켜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한다.

○ 학과 차원의 재발방지 교육 실시

-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및 관련 사례에 대한 교육 영상자료를 보여주고, 영상매체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실태 및 차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 필요시 인권센터에 교육의뢰

(4) 학교 인권센터

○ 절차에 대한 설명 제공 및 피해자 요구 파악

- 피해자에게 사건해결 절차를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해결에서 원하는 것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만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찰 신고에 대해서도 설명해준다.
- 최초 상담에서 피해자에게 인권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와 범위, 비밀보장에 대한 센터의 방침과 기준, 사건조사 심의 및 징계절차, 학교 규정, 관련 법령 및 기관에 대해 안내하고, 적절한 증거확보 방법을 피해자에게 알려준다.

○ **상담, 사건조사, 중재, 사후조치**

- 피해자와 가해행위자의 공간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늦어도 조사시점에서는 신고자와 가해행위자의 공간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학과,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필요 시 피해자 동의하에 사건발생 학과의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유사피해 사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다.
- 피해자와 가해행위자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당사자 개인신상정보와 사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를 요청한다.
- 인권센터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를 지원해야하며, 지원하는 과정에서 협조가 필요한 부서와 직원들에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원 보장을 위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건처리 협조를 구하기 위해 최대한 가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
- 가해자가 학내에 게시할 공개사과문을 작성할 때, 내용이나 표현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자문을 제공하여 중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중재로 사건이 종료되면 중재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사후관리 한다.
- 가해자에게 피해자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를 알리고 이행하도록 한다.
- 피해자 및 가해행위자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 당사자 동의를 구하고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연결해준다.
- 해당사건 처리가 종결된 이후 모니터링,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행위자 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피해자 심리적 치유와 피해회복을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

○ **예방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

- 재발방지, 공동체 회복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한다.
- 사건발생 학과에 외모평가 및 동료인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 성희롱임을 인식 시키고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단체 카톡방에서 이루어진 성희롱 발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도 해당 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공지한다.
- 단체 카톡과 같이 통신매체를 통한 사건의 특성이 반영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가해자들에게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라. 기타 성희롱·성폭력 언동 사례 모음

1) 교수와 학생 간 성희롱·성폭력 사례 (동국대 인권침해대응 매뉴얼, 2016 참조)

- 교수가 강의내용과 관련이 없는 성적인 사진 및 동영상을 수업의 자료로 활용한 경우
- 강의 맥락과 관련 없는 성적인 농담 혹은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 성적 굴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경우
 - 교수가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온 학생에게, '수업 늦게 들어온 별로 제일 앞에 앉아서 기쁨조나 해라' 라고 말한 경우
 - 교수가 수업시간에 앞자리에 앉아있는 학생에게 '첫 경험은 몇 살에 하였느냐? 너 여자(남자)친구가 딱지 떼어줬느냐?'라고 말한 경우
 - 학생이 교수에게 '결혼하면 성관계는 일주일에 몇 번 하느냐'와 같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
 - 교수가 학생에게, '내가 10살만 어렸어도 교수고 제자건 뭐고 상관없이 너랑 사귀는 건데'라고 말하여 학생이 성적 굴욕감을 느낀 경우
 - 교수가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학생을 가리키며 '그렇게 옷 입으면 봐달라고 입고 온 건데 또 내가 봐줘야지 기분이 좋지'라고 말한 경우
 - 필요 이상의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
 - 뒷자리에 앉아 있는 학생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일부 신체부위를 동의 없이 만지는 경우
 - 컴퓨터 사용 중 마우스에 손을 겹쳐서 잡거나 필요 이상으로 신체를 밀착하여 지도하는 경우
 - 엉덩이를 만지는 경우
 - 실기를 지도하는 교수가 지도의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
 - 불필요한 상황에, 학생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 상대방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지는 경우
 -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도록 한 경우
- 일부 성을 비하하거나 성소수자를 비하한 경우
 - 사석 혹은 수업시간에 교수가 학생에게 '너 게이 아냐?' '사내자식이 왜.....' 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경우
 - 강의 도중 교수가 '남자들은 섹스 생각만 하느라 공부를 안 한다'라고 말한 경우
- 회식 및 사석에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경우
 - 술자리에서 교수가 '존경의 의미로 뽀뽀'해달라며 요청한 경우 혹은 뽀뽀를 한 경우
 - 술자리에서 자신과 혹은 자신이 초대해 상대방의 기분의 맞추도록 강요하거나 종용한 경우(옆자리 앉히기, 러브샷 등)
 - 술자리에서 억지로 밀착해서 춤을 추도록 강요하거나 키스 등 스킨십을 하는 경우

- **부당한 성적요구를 하는 경우**
 - 교수가 수업 성적 수정을 요청한 학생에게 성적 수정을 빌미로 사적 만남을 요구한 경우
 - 교수나 조교가 논문지도에 대한 보답으로 성상납을 요구하는 경우
 - 성적(性的)인 요구를 한 경우
 - 만남이나 성적 접촉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줄 것을 암시하는 경우
 - 만남이나 성적 접촉 등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성적이나 논문, 기타 이익을 줄 것이라는 명시적 암시적 발언
- **기타**
 - 교내·외에서 학생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허락 없이 촬영한 경우
 - 학생 또는 동료의 싫다는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구애를 계속하는 경우
 - "여자가..", "남자가.."와 같이 성적 고정관념이 있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며 성차별 하는 경우

2) 교원 및 교직원 간 성희롱·성폭력 사례

- **성별을 근거로 한 업무상의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 성별을 이유로 동료 직원(교수)을 비하하거나 기회의 차별을 주는 경우
 - 성별을 이유로 채용 및 업무상의 공정치 못한 차별을 주는 경우
- **회식 등 상황에서 성적굴욕감이 들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술자리에서 자신과 혹은 자신이 초대된 상대방의 기분에 맞추도록 강요하거나 종용한 경우 (옆자리 앉히기, 러브샷 등)
 - 퇴폐업소 혹은 일부 성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공연장에서 회식을 하는 경우
- **원하지 않는 만남 및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
 - 업무와 관련 없는 이유로 퇴근 이후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
- **성적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경우**
 - 단둘이 있는 차 안에서 여성 직원의 화장 상태를 평가하며, 제대로 신경 쓰라고 말하는 경우
 - 공공연하게 이성인 직장동료의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비판을 하는 경우
- **업무상 불공정하거나 성적굴욕감이 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
 - 성비하적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경우
 - 업무상의 호의를 핑계로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것, 혹은 사적 만남의 거절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직장동료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과 메신저 등에서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경우
 - 업무 중 음란물을 보는 경우

- 특정 성별의 신체부위를 비하하거나, 신체부위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경우

3) 교직원과 학생 간 성희롱·성폭력 사례

-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경우
 - 옷차림, 외모, 화장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 성차별 발언 (“남자가.....”, “여자가.....”)을 공공연히 하는 경우
- 근로학생 등 선발에 있어서 타당한 이유 없이 성차별을 하는 경우
- 학생에게 성적함의가 있는 제안을 하는 경우
- 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상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여 개인적 연락을 취하는 경우
- 학생이 음란전화를 하는 경우
- 학생 또는 교직원의 싫다는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구애를 계속 하는 경우

4) 학생 간 성희롱·성폭력 사례

- 성적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경우
 - 메신저 단체방 혹은 모임에서 특정인에 대한 성적 굴욕감이 드는 말을 하는 경우
 - ※ 이야기의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더라도 문제화 될 수 있다.
 - 단체 메신저방서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음란한 사진 등을 게시하는 경우
 - 술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원치 않는 러브샷 등을 시키는 경우
 - 한쪽 성에 대한 편향된 생각을 공공연히 말하는 경우
 - 성소수자의 동성애 사실 및 성전환 사실을 퍼트리는 경우
-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
 - 술이 취한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는 경우
- 연인(혹은 헤어진 연인 간) 데이트 성폭력
 - 헤어진 연인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경우
 - 헤어진 연인이 음란 사진 및 동영상 배포를 빌미로 협박 하는 경우
-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

5) 스토킹 피해

- 스토킹은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자신의 일방적인 호감만을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 또는 오해 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려는 의도와 그에

따른 행동을 말함

- 주로 상대방을 계속 쫓아다니거나, 전화우편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토로하거나, 선물공세를 펴며 상대방에 접근과 접촉을 시도하고 관심을 표명함
- 이 외에도 반복되는 괴전화, 침묵전화, 음란전화, 협박전화, 휴대폰에 일방적인 메시지 전송, 5분마다 혹은 하루 20~40번씩 전화, 집 앞에서 기다림 또는 직장 출근길이나 퇴근길 대기, 끈질기게 선물 보내기, 한밤중에 찾아와 동네에서 소란 피우기, 술 먹고 찾아와 대문 두들기고 무단 침입하여 기물 파손하는 행위
- 가족들과 싸우고, 차에 태워 끌고 다니며 구타, 강간, 사진이나 비디오 등을 촬영하여 협박, 금품 혹은 카드 갈취, 내연의 관계라고 소문내고, 이성교제나 결혼 방해 등의 행위로 즉시 인권센터에 신고하여 추가피해를 막아야 함

05

자주 묻는 질문

5. 자주 묻는 질문

가. 동국대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왜 학교에서도 개입을 하나요?

동국대학교의 구성원 모두는 「동국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규정은 '교내·외를 불문하고 동국대학교 정관, 학칙,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인권침해 사건'에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동국대학교 학생, 교직원, 교원 모두가 학외에서 발생한 사건일 지라도 교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동국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거나, 타 기관 및 대학교에서 사건 처리 협조 요청을 하였을 경우에 동국대학교 인권센터에서도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끝내기로 하였는데, 왜 학교가 개입을 하나요?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가 성사되었거나 피해자가 더 이상의 문제제기를 원하지 않을 시에는 학교가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끝냈다'는 것이 정당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권센터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가령 피해자에게 사건은폐 요구, 신고 시 불이익 내포, 휴학 및 전과 종용과 같은 방법으로 합의를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의 입장에서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학교가 다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잘 끝났다'라는 말의 의미가, 과연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처가 회복된 일인지 혹은 관리자 및 가해자의 입장에서 원만하게 잘 처리되었다고 느껴지는 일인지는 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다. 당시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동의인줄 알았는데 왜 성폭력이 되나요?

"상대방도 원하는 줄 알았다", "서로의 동의하에서 한 일이다", "이정도 상황이면 동의한거나 마찬가지 아니냐"와 같은 내용은 성폭력 가해자의 단골 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동의'라는 개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존 "No means no"라는 슬로건은 요즘에는 "Yes means yes"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성관계에 있어서 '동의'는 '거절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동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는 행동을 보고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 ‘술이 취해서 나에게 기대서 잠들더라, 당연히 나에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나를 먼저 유혹해 놓고 아니라고 하니 나도 황당하다’, ‘둘이서 술을 먹자고 하는데 응한 것은, 나한테 관심 있다는 표현인거 아니냐?’, ‘키스까지 했으면 당연히 잠자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등등 동의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아 동의하는 줄 알았다’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이해입니다. 동의의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면, 0은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10은 강력하게 동의하는 것이 되겠지요.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0에 가까운 동의가 될 수 있습니다.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가 ‘동의’가 되지는 않음을 명심해주세요.

라. 어떠한 행동은 해도 괜찮은 건가요?

나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러한 나의 노력이 성희롱으로 보이게 될까봐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내가 친근감을 표현하려고 한 농담과 행동인데 혹시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희롱으로 느끼지는 않을까 걱정해 “괜찮은 행동”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괜찮은 행동의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손잡는 행위=성희롱’과 같은 식의 개념정의는 어렵습니다. 상황이 발생한 맥락,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굴욕감의 정도 등에 따라 성희롱 여부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센터에서는 ‘괜찮은 행동’의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고민이 되는 행동’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마. 제가 2012년에 당하였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동국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 따르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2012년에 당하였던 일은 인권센터에 신고할 수는 없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성추행·성폭행 사건,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조사하지 않고 각하합니다.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가 가능합니다.

마. 제 3자로서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인권센터로 신고해야 하나요? 만약 피해자가 학교에 알리지 않고 저의 재량으로 사건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사건의 해결방향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가 위원회 심의를 걸쳐 해결을 원하는지, 혹은 중재로 인한 화해를 원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공식적 절차로 해결을 원한다면 인권센터에 사건을 인계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질문과 같이 '개인의 재량'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단, 교직원이 사건에 대하여 인지하였을 때에는, 인권센터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인권센터에 방문한다고 하여도 필히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사건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정보전달과 지원을 위하여 인권센터에 인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처리에 있어서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사. 성폭력 신고는 가급적이면 자제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학교의 명예도 실추되고, 괜히 굶어 부스럼 만드는 일인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동국대학교 구성원이 관련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반드시 신고 및 보호하여야 합니다. 물론, 동국대학교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무조건 덮어두어야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내 성희롱·성폭력은 모두가 함께 예방하고, 학교가 앞장서서 근절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성희롱·성폭력 신고는 적극 권장하여야 할 일입니다.

아. 학교에 신고할 생각은 없지만,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교내 신고를 원치 않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나 혹은 타 기관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인권상담을 이용하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도움과 서비스 등을 원하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와 학생들 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싶고요.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동국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학생, 교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과차원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혹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권센터의 강사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방향에 대하여는 사전 논의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차. 성희롱의 구성요건과 성적언동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1) 성희롱이란?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입니다. 성희롱 구성요건은 세가지 법률이 유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는 대학도 포함됩니다. 다만 학생과 학생간의 경우에는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국대 인권센터규정을 적용합니다.

동국대 인권센터 규정에서는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세부내용은 10~11쪽 참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성적언동이란?

대법원은 성적 언동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성적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라고 판시하고,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에 의하면,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기타 성희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매뉴얼 4~6쪽 참조).

(이상 동국대인권센터 제공)

06

참고문헌

6.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12), 성희롱 진정사건백서 (부록 : 시정권고사례집 제5집)
- 국가인권위원회 (2014), 성희롱시정권고 사례집 제6집
- 국가인권위원회 (2015),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7집
- 국가인권위원회 (2018), 성희롱 예방교육 (사이버인권교육 1차시)
-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침해조사 매뉴얼
- 동국대학교 (2016), 인권침해 없는 캠퍼스를 위한 인권침해예방 및 대응 매뉴얼
- 동국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2018)
- 교육부(2018),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개발 정책
(연구책임자: 윤덕경 외 4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오세혁, 정화성 (2013), 성희롱 사건의 처리 절차에 대한 고찰 (공공기관의 성희롱 사건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37집 제3호, 2013 Vol 37, No. 3, pp. 5~37
- 여성가족부 (2012),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처리 매뉴얼 개발
- 여성가족부 (2018),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 여성가족부 (2017),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직사회 만들기 (리플릿)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51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5977호)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2018 제정)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제3조 감청)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성희롱결정처분취소, 성적언동)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행정처분취소, 형사재판과 징계혐의 인정)
- 대전고등법원 2006.7.28. 선고 2006노172 판결. (애인관계 여성이 안 만나준다고 협박)

<부록1>

동국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국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고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대학교 직제규정 제43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동국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2.17. 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018.12.17. 개정)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써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및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다. 성희롱의 가해자 및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포함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을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학교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의 민원을 말한다.
5.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및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6.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7.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8.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또는 고충민원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1. “관계부서”란 사건의 신고 및 고충민원 접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2. “본교 구성원”이란 동국대학교의 정관, 학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내·외를 불문하고 본교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한 인권침해 등의 사건에 적용한다.

제2장 인권센터의 조직 및 업무

제1절 조직 및 업무

제4조<2018.12.17. 삭제(조직)>

제5조(조직과 구성) ① 인권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직제규정 제11조의2(개방형직위)에 따른 전문성 갖춘 자를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2018.3.13., 2018.12.17. 개정)

②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행정팀을 두며, 행정팀은 성희롱·성폭력 및 그 밖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각종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 외의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한다.(2018.12.17. 신설)

③ 센터에는 전문상담원 또는 연구원을 두며,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조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2018.12.17. 제2항에서 이동)

④ 센터에는 행정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2018.12.17. 제3항에서 이동)

제6조(업무) ① 인권센터는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관련 상담 업무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상담, 신고 및 민원접수, 조사, 구제(2018.12.17. 개정)

2.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피해자의 보호(2018.12.17. 개정)

3.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활동(2018.12.17. 개정)

4. 교내 인권 실태조사 실시(2018.12.17. 신설)

5. 그 밖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018.12.17. 제4호에서 이동)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부서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인권센터는 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2018.1.2. 신설)

제6조의2(성희롱 등 예방교육 실시) ① 인권센터는 연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권센터는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

제2절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인권센터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성비(남여)는 일방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2017.2.20. 개정)

② 위원장은 인권센터장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총학생회 추천을 받은 서울캠퍼스 재학생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교수, 직원, 학생을 포함하여 학내외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2017.2.20. 개정)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기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센터의 운영 및 평가
2. 학내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2018.12.17. 개정)
3. 중대 사안으로써 운영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
4.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운영계획 및 운영방안
2.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폐기
3. 예산과 결산

제10조(자문위원회)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절 동국인권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동국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에 관한 구제조치의 권고(2018.12.17. 개정)
3.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고발·징계 권고와 기타 필요한 사항

(2018.12.17. 개정)

제12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인권센터장으로 한다.(2017.2.20. 개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7.2.20. 개정)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2017.2.20. 개정)

1.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2. 전임교원
3. 직원
4. 학생
5. 인권센터 전문 상담원
6. 그 밖에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조사와 심의가 종결되는 때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7.2.20. 개정)

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성비는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⑥ 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을 두어야 한다. 인권침해 사안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⑦ <2017.2.20. 삭제>

⑧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는 인권센터에서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시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2017.2.20. 개정)

② <2017.2.20. 삭제>

③ <2017.2.20. 삭제>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7.2.20. 개정)

⑤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4조(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장 및 위원 또는 조사위원회 위원 중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사건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기피 및 회피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 없이 제척·기피 및 회피할 수 있다.(2017.2.20. 신설)

1. 의견 사안이 심의 위원 본인인 경우
2. 의견 사안의 심의 대상자가 심의 위원이 속한 부서 또는 학과(부)의 교원, 직원 및

학생인 경우

-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대상인 경우는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시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2017.2.20. 개정)

제3장 인권침해 등에 관한 조사와 구제 등

제1절 사건의 신고

제15조(신고)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이나 대리인, 또는 침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및 기타 고충민원이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2018.12.17. 개정)

②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2018.12.17. 개정)

③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제16조(신고의 각하) ① 인권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제15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3. 제15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4. 피해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단,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조사할 수 있다.)(2018.12.17. 개정)
5.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인권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조치)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즉시 중지
2. 추가 인권침해 발생 예방 조치
3. 피해자 보호조치

② 신고인이 임시조치의 이행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임시조치 요청을 즉시 철회한다.

제18조(신고의 기각) ① 센터장은 사건 조사 결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고자가 위증을 하거나 조사 과정 중 신고자에 의한 인권침해 가해가 발생하는 경우

- 3.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5.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의 철회) ① 신고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신고자 및 피해자가 인권센터의 연락 및 조치에 대하여 3회 이상 응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신고의 철회로 간주한다. 철회 전 최종 연락 및 조치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사건의 조사

제20조(조사의 개시) ① 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2018.12.17. 개정)

- ②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④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시하여야 한다.
- ⑤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2018.12.17. 신설)

제21조(조사의 방법) ①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4.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5. 형사사법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로 갈음
-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건의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적인 진술서 제출 및 출석이 요구될 수 있다.
-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는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 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석시일 이전에 인권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2018.12.17.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센터장은 직권조사 후에 당사자 간의 중재를 하거나,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위원회에 회부를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18.12.17. 신설)

제21조의2(조사중지) ① 센터장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3. 그 밖에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센터장은 조사를 중지한 사건에 대하여 중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재 및 조사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고, 조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조사를 재개한다.

③ 조사중지 후 6개월이 지나 더 이상 조사를 계속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보고 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종결 처리된 사건은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한다.

[2018.12.17. 본조 신설]

제22조(조사위원회의 기능)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의 사건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8.12.17. 개정)

②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진위여부 및 인권침해 해당 여부를 조사한다.

제23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센터장으로 하고 조사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5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또한, 사건조사에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당해사건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해당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산한다.

제3절 사건의 처리

제24조(중재) ① 신고인이 사건조사를 통한 해결이 아닌 중재를 요청할 경우 인권센터장은 중재를 할 수 있다.(2018.12.17. 개정)

② 피신고인이 중재안을 제안할 경우 인권센터장은 1회에 한하여 신고인 및 대리인에게 중재안을 전달할 수 있다.

③ 중재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인은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25조(구제조치, 징계 및 고발 등의 권고) ① 위원회는 센터의 조사결과를 심의한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관련 규정·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2. 피신고인 등에 대한 징계(이 경우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 등에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인권침해 등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분이 필요한 경우 피신고인 등에 대한 고발조치

② 위원회는 전 항의 권고와 별도로 피신고인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일 경우 반성문 제출, 의무 교육 등 가해자가 반성할 수 있는 조치 권고
2.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봉사·배상 등의 권고
3. 가해자가 외부인일 경우 가해자의 소속기관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징계를 요구
4. 피해자의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당부서에 권고
5. 피해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위증하는 자에게도 제1항 애지 제2항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6. 기타 사건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권고

③ 가해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중조치를 하거나 또는 해당 징계 기관에 가중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
2. 가해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3. 피해자나 참고인 및 신고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
4.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신원 노출과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거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2018.12.17. 본조 개정]

제26조<2018.12.17. 삭제(가중징계 및 가중조치)>

제27조(구제조치 이행 및 후속조치) ① 센터장은 제25조의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발방지나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단, 제1항의 경우 센터장은 그 사유를 검토 후 필요시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방안을

논의 할 수 있다.

[2018.12.17. 본조 개정]

제27조의2(의결서 작성, 송부 및 사후관리) ① 인권센터는 제25조의 위원회 의결 후 14일 이내에 해당 의결 내용의 요지를 기재한 의결서 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등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인권센터는 조사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018.12.17. 본조 신설]

제28조(징계의 요청) ① 센터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사유와 징계수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관련 부서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2018.12.17. 개정)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에게 보고 후 징계사유와 징계수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관련 부서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사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임시조치 관련조항 또는 구제조치조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누구라도 인권센터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6.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 폭행 또는 협박이 발생한 경우(2018.12.17. 신설)
7. 제24조에 따른 중재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2018.12.17. 신설)

제4장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및 기록

제2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외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을 포함한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자문위원을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⑤ 당사자 및 관련인은 해당 사건의 조사 및 처리의 결정 이전까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0조(기록의 보존과 열람) ① 인권센터장은 사건조사 및 처리과정에 대한 모든 과정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기록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외에는 공개되거나 열람될 수 없다. 부득이 공개 또는 열람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모든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2조(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인권센터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과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2018.1.2. 신설)

③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2018.1.2. 개정)

제33조(시행지침)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2015.10.12.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3조(폐지)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17.2.20.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13.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7.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록2>

세계인권선언문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로 귀착되었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은 보통 사람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고,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나라 사이의 우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유엔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고, 회원국은 유엔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신장을 성취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하기에, 그리하여 이제 유엔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관할권 아래에 있는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나라들이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과 같은 그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한 사람이 속한 나라 또는 영토가 독립국이건 신탁통치지역이건, 비자치지역이건 또는 그 밖의 다른 어떤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곳이건, 그 나라나 영토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자행되어서는 안된다.

제3조

모든 인간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

아무도 노예의 신분이나 노예의 상태에 얽매어 있지 아니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이건 금지된다.

제5조

아무도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서 한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7조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그 어떤 차별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한 차별의 선동에 대해서도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8조

모든 인간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 법정에서 유효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9조

아무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에 관하여 재판 받게 될 때,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적인 심문을 완전히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1. 형사상의 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보장들이 행사된 공적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판정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아무도 그것이 범해질 당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던 행위나 태만으로 인해 형사범으로서의 유죄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다. 또한 형사범죄가 행해졌을 당시의 적용가능한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집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당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13조

1. 모든 인간은 각국의 경계 안에서 이동과 거주에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에서도 떠나고 또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갖는다.

제14조

1. 모든 인간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또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진정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소추의 경우에는 호소될 수 없다.

제15조

1. 모든 인간은 어느 한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
2. 아무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갖는다. 이들은 결혼의 기간동안과 그 해소의 시점에 있어 결혼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2. 결혼은 장래의 배우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집단의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에 의해서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1. 모든 인간은 타인과의 연합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갖는다.
2. 아무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인간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교리, 전례, 예배, 의식에 있어서 혼자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인간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국경에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인간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제21조

1. 모든 인간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국 내의 공공기관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갖는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투표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서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각국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제23조

1. 모든 인간은 일,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등의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3. 모든 일하는 인간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존을 보장해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해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4조

모든 인간의 합리적인 노동시간의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갖는다.

제25조

1. 모든 인간은, 의식주와 의료,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그 밖의 자신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생계의 결핍의 경우에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어린이는 적서에 관계 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제26조

1. 모든 인간은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실력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온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은 모든 나라들과 인종 또는 종교집단 사이에서 이해, 관용,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엔의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다.

제27조

1.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전과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산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득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8조

모든 인간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제29조

1. 모든 인간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의 행사에 있어,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합당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일반인의 안녕을 위한

공정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제한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해서 행사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떤 조항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 중 어느 것이라도 파괴할 목적을 갖는 어떤 활동에 종사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부록 3>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에 따른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① 임용권자등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신상 정보의 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등이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 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 ① 임용권자등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
2.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
3.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및 그 밖에 임용권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② 임용권자등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 그 신고를 이유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

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등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임용권자등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찰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
3. 제2호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
4.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
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하위등급 부여
6. 감사·감찰·인사·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 제한

제7조(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임용권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게 그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주의·경고
2.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3. 승진임용 심사에서의 불이익 조치
4.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의 불이익 조치
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그 밖에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제8조(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 등 처리 절차) ①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과 관련하여 제7조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피해자등이나 신고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라 고충에 대한 상담 신청 또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인사 감사 규정」에 따른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등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 인사상 불이익 여부에 대한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된 조치가 제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용권자등이 부담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의 지시 등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임명권자·임명제청권자 및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임용권자등의 의무) ① 임용권자등은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등은 제3조에 따른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등) 제4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임용권자등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위임) 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부칙 <제29317호, 2018. 11.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4>

성희롱·성폭력 신고 기관

- 동국대학교 인권센터 : 02-2260-3648/3648 (교내 3648 / 3649)
- 국가인권위원회 1331
- 교육부 전화 신고센터 : 02-6222-6060 (온라인 신고센터 : 교육부 홈페이지)
- 중부해바라기센터 : 02-2266-8276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02-735-7544)